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000-000862-01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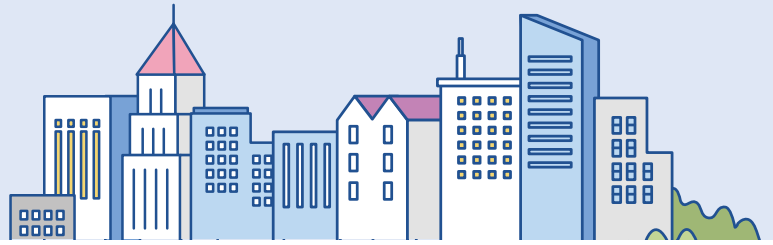
2022. 3.



I.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6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와 조치사항	7
2.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와 조치사항	19
II.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리	26
1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28
1. 종사자 현황 파악	28
2. 업무 분야별 근무환경 파악	29
3.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29
4. 사업장 구분	32
5. 도급·용역·위탁 현황	35
2 조직·인력 등 확보	36
1. 본부 전담조직 설치	37
2. 사업장별 전문인력 등 구성	39
3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43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43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45
3.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54
4.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55
5. 도급·용역·위탁 업무 기준	60

4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63
1.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이행	63
2. 교육·훈련	64
5 점검·개선	67
1.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점검	67
2. 필요한 조치 및 개선	68
III. 도급·용역·위탁 사업 산재예방	76
1. 시설물 등 유지·보수	77
2. 실내건축	85
3. 기계·설비 교체·설치	90
IV. 발주공사 산재예방	110
1.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111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14
3.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16
4. 추락사고 예방 관리	118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난 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22.1.27. 시행)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21.7.1.)



하지만 여전히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연간 800명이 넘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산재예방은 민간기업만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가 예외없이 반드시 해야하는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수행·발주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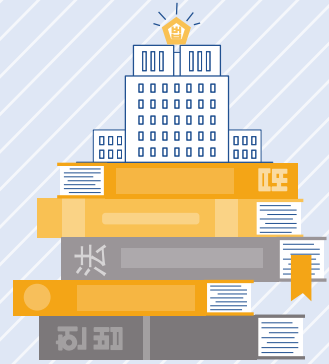
I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와 조치사항
 2.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와 조치사항
- 

I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공공행정의 경우에도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이 장에서는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좌측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자율진단표 등 → 매뉴얼 129페이지 QR 코드 참조)



I.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와 조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종과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중 독립성이 인정되어 소속 국가·지자체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기관) 단위로 산안법 적용

● 다만, 산안법은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 대해서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시행령 별표 1 제4호)

* 산안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계)·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 그러나,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 제외 없이 산안법을 전부 적용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p> <p>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제1절(안전보건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4조~제24조 ○ 제2장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5조~제28조 ○ 제3장(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9조~제33조

②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산안법 주요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산업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 산안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공무원 포함)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57조)

벌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54조)

* (중대 재해)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벌 중대재해를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법 제34조)

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의한 위험, 위험장소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8조)*

*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벌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건조치)** 사업주는 환기·채광·조명 등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39조)*

*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벌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63조)

※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법 제2조제6호)

벌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64조)

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129조~131조)

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㉓ 현업업무종사자가 있는 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 제외 없이 산안법 모든 규정이 적용(시행령 별표1)

따라서, 현업업무종사자가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을 구축·실시해야 함*

* 산안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법 제2장 제1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기관장, 단체장)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5조)*

*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시행령 [별표2])

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6조)

※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명 이상이지만 하면 선임의무 발생

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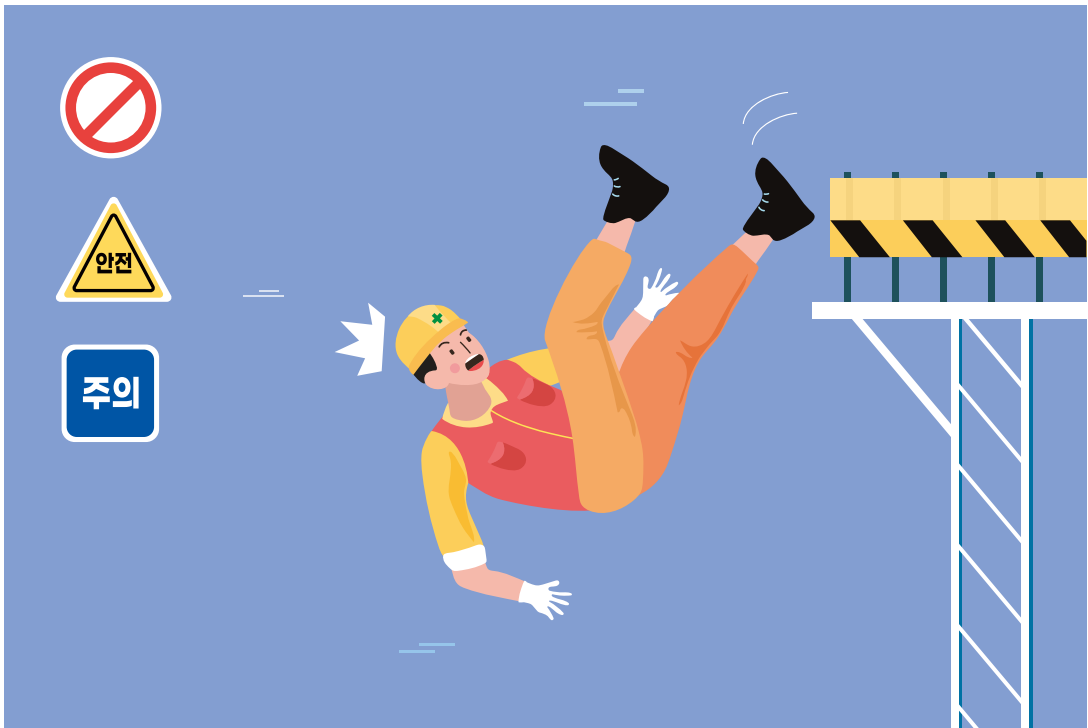
-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두어야 함(법 제17조)

※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시행령 [별표3])

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①공공기관이 도급을 주어 수급인 근로자가 공공기관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고, ②공공기관근로자(공무원 포함)와 수급인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와 해당 공공기관에서 작업하고 있는 수급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50명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시행령 제16조 제3항)(다만, 수급인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음) → 이는 보건관리자의 경우에도 동일

- ▶ 한편, 현업업무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며, 현업업무종사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법 제17조제3·5항)



-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자를 보건관리자로 두어야 함(법 제18조)

※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시행령 [별표5])

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도급의 경우, 일정한 경우 합산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의 경우와 동일

- ▶ 한편, 현업업무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며, 현업업무종사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법 제18조제3·5항)

-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법 제22조)

※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시행령 [별표5])다만, 외부 위촉 가능(시행령 제29조제2항)

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다만, ①「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②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업업무종사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검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법 제62조)

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도급인 사업장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시행령 제52조)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법 제2장제2절)

- 현업업무종사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법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세부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법 제3장)

- 사업주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29조)

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특별교육),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그 외 교육)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 4])

- ▶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
- ▶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그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함(특별교육)

구분	내용
신규 채용시 교육	· 신규 채용자 최초작업 종사 전 실시, 8시간
근로자 정기교육	· 근로자 유형별로 정기적으로 실시 - 현업업무종사자는 매분기 6시간 -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 전년도 산재 미발생 사업주는 1년간 1/2 이상으로 실시 가능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2시간
특별교육	· 유해·위험한 작업(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9개 작업)에 종사 전 실시, 16시간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내 신규교육, 2년 마다 보수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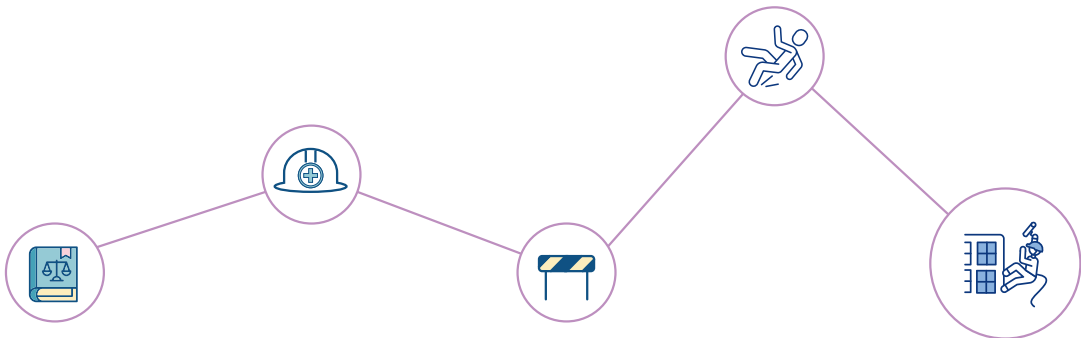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6시간
안전관리자	34시간	24시간
보건관리자	34시간	24시간

4 각 기관별 조치 필요 사항

- 각 기관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등 산안법에 따른 의무는 법률상 필수적 이행사항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기관별 조치가 필요함
- ▶ 각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는 산안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필요시 직제 개편 등을 통해 기관별로 준비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임

i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관련, 사전 준비 참고사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직접고용 근로자(공무원, 공무원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명칭·신분에 관계없이 그 소속으로 판단) 현황(근로자의 수)
- ② 중앙행정기관 내 조직의 인사관리, 회계, 계약체결의 주체 등 독립적인 운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업장으로 구분되는 현황
- ③ 사업장 단위별로 “현업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파악
- ④ 도급계약 체결 현황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의 근로자 현황
- ⑤ 중앙행정기관 내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의 확인
- ⑥ 중앙행정기관 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작업방식의 파악 등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종사자 관련 고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키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별표 2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판단 행정해석

질의내용

경상남도 도청 소속 도로과(도로보수 업무)를 경상남도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집행기관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 그러한 사업의 수행이 개별 부서 단위에서 관리·시행되더라도 개별 부서 단위는 독립성이 없어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업무가 관할구역 전반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작업장소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함
- 그러므로 사업의 수행이 도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관할구역 전체에서 이뤄지더라도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산재예방정책과-3067, 2021.6.25.)

질의내용

대구광역시 소속 상수도사업본부를 대구시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소가 시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 및 직원채용·복무·임금·교육 등을 명백히 구분하여 시행하는 등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한다면 해당 사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5.21.)

질의내용

학교를 포함한 교육청 산하 기관들의 인사·회계 등의 독립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바, 시·도교육청의 사업장 단위는?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규정은 적용단위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 등 단일 사업으로서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개의 적용단위로서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 학교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의 현업업무가 장소적으로 분산된 각 학교에서 이뤄지더라도,
 - 학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회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업무 종사자의 채용주체, 근로조건 결정권, 노무관리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산업법의 적용단위로서 사업장은 교육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산재예방정책과-4684, 2020.9.1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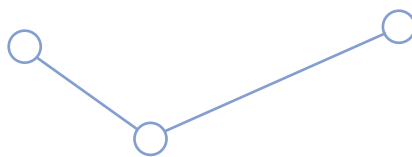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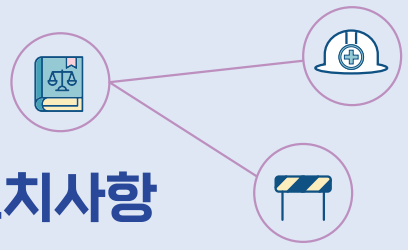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 안전관리자
 -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훈자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훈자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II.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와 조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 제정목적

- 산업안전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지와 관심에 좌우됨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제정 목적임
- ▶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2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중대법 제2조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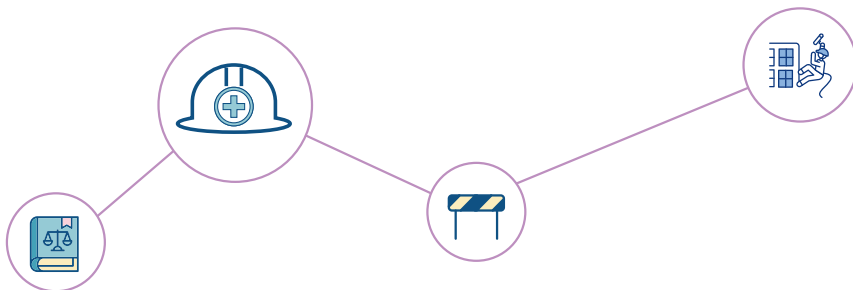
- **(사망)**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
- **(부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는 해당 부상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재활치료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
-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의 경우 노출된 유해인자와 성분, 작업 양태 등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입증되었다면, 종사자 간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거나 발병 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공공부문 적용

- **(의무주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며,
 - ▶ 법에 따른 의무이행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관의 경영책임자로서, 각 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
 -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기관
 -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장”을 의미
 - ▶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적용 대상임
- **(보호대상)** 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하며,
 - ▶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무원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

4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조치를 해야 함(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핵심 규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세부 내용은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중앙행정기관의 장)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②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 ④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
에 필요한 조치

☑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평가·관리
반기 1회
이상

업무 수행
수준 평가

점검 반기
1회 이상

3. 유해·위험요인 조치
7. 의견 청취 절차
8. 조치 매뉴얼
9. 도급·용역·위탁시 기준 및 절차 검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 필요 조치

점검 반기
1회 이상

2. 의무 이행 필요 조치
4. 교육 실시 필요 조치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II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리

1.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2. 조직·인력 등 확보
3.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4.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5. 점검·개선

II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도
대부분 준수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단계 중
③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⑤점검·개선 단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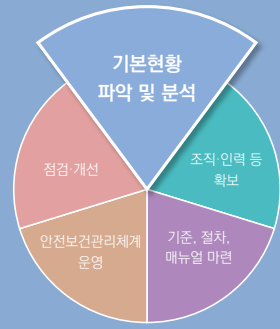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안)



아래 구축 방법은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추진단계별 준비를 통해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추진단계	추진내용
1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사자(공무원, 현업업무 종사자 등) 현황 2 업무 분야별 근무환경 3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4 사업장 구분 5 업무 분야별 도급·용역·위탁 현황
2 조직·인력 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부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구성 2 사업장별 전문인력 등 구성
3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3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4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할 위험 대비 매뉴얼 5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 기간 기준
4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이행 2 교육, 훈련
5 점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준, 절차, 매뉴얼 등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2 필요한 조치 및 개선

1 (1단계)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 현황과 내·외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내부 환경: 조직·지휘계통, 업무 환경, 업무 분야별 위험성
외부 환경: 법·규제 등

1 종사자 현황 파악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절한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공무원, 비공무원, 현업종사자 등 현황 파악이 필수임
- ▶ 기관별 종사자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사업장 단위 구분,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 종사자(중처법 제2조제7호): ●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공무원 포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종사자 현황 파악 예시

구분	총계 a+b+c	직접고용 근로자				수급인c 근로자 (사내도급)	비고
		공무원	현업a	비공무원	현업b		
총계							
본부							
A청							
a센터							
b센터							
c센터							
B청							
d센터							
e센터							
f센터							
사업소							

2 업무 분야별 근무환경 파악

- 공무원, 공무원직,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 직원을 직무별로 구분하여 업무 분야별 조직·지휘 계통, 근무환경, 작업방식 등 파악
 -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을 참고하여 직무 구분에 활용
 - ▶ 위임전결규정 등 확인을 통해 조직·지휘 계통 확인
- 건강진단(일반,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등) 결과 확인을 통한 근무환경 파악
 - ▶ 부서·직무별 등 건강이상소견자 분포현황 및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 확인
 - ※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업무 조정, 근로시간 조정 등의 대책에 반영

3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 업무 분야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초자료인 과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 ▶ 자체 산업재해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확인

④ 산업재해 기록(산안법 제57조제2항, 시행규칙 제72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 ▶ 재해 발생원인 파악 부실(근로자의 과실로만 분석)로 재발방지대책이 부실(교육 등 단편적인 대책으로만 수립)한 경우 해당 위험요인이 제거되었는지 추가 확인하고, 필요시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선

④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설문조사 등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종사자 안전보건 설문조사

설문조사 배경 기술

(예시) 동 설문조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내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보고 느끼신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나와 내 동료가 일하는 곳을 보다 안전하게 만듭니다.

1 일하시는 업무분야는 어디입니까? (해당 분야에 ✓)

각 행정기관의 업무 세부 분야별 세분화하여 사용

2 일하시는 중 사고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분야에 ✓)

*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 다치지는 않았으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었던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 작업 중 넘어졌으나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하여 작성)

예 아니오

2-1 사고는 어떤 유형입니까? (해당 분야에 ✓)

- 떨어짐(높은 곳, 개구부(지붕, 바닥, 벽 등에 뚫려있는 곳) 등에서 떨어져 다침)
- 넘어짐(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면서 다침)
- 부딪힘(차량, 설비, 기계·기구, 구조물 등 물체와 부딪혀 다침)
- 끼임(물체와 물체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끼임으로 인해 다침)
- 깔림·뒤집힘(물체가 쓰러지거나 뒤집힐 때 깔리면서 다침)
- 무너짐(쌓여진 물체나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다침)
- 물체에 맞음(위에서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아서 다침)
- 감전(인체가 전선 등에 접촉하여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낌)
- 화재·폭발(주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다침)
- 기타 유형()

3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분야에 ✓)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 화학물질,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거나 작업조건·방식 등에 의해 발병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 아니오

3-1 질병은 어떤 유형입니까? (해당 분야에 ✓)

- 근골격질환(신체에 부담되는 힘·동작, 부적절 작업자세 등으로 근육, 인대 등 손상)
- 뇌·심혈관계 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 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
- 기타 질병()

4 일하시는 곳에서 사고(떨어짐, 넘어짐, 베임, 끼임, 깔림 등 일하는 중 다치는 것)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다면 모두 작성하여 주세요.

- * 예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중심으로 예시
- * 위험요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장소, 해당 위험요인 등을 같이 작성해주세요

5 일하시면서 건강에 영향(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 이유로 걸린 질병)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모두 작성하여 주세요.

- * 예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상 영향을 중심으로 예시
- * 건강상 유해요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장소, 해당 요인, 작업내용 등을 같이 작성해주세요

6 기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4 사업장 구분

- 사업장 단위(본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 구분이 우선 되어야 함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나,
 - ▶ 분산되어 있는 경우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 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사업장 판단기준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 업무장소, 업무의 성격, 인사관리, 예산, 채용, 복무, 임금, 교육 등 파악을 통해 사업장 구분에 활용

📁 구체적 독립성 판단기준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능력이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1.6.25)

● 본부 및 소속기관별 독립성 판단을 위한 업무 파악(예시)

구분	본부	청	센터	사업소
○업무 장소	○	○	○	○
○업무의 성격	○	유사	유사	○
○인사				
-공무원	○	○		○
-공무직	○	○		○
-기간제	○	○		○
○보수 지급	○	○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		○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공무직	○	○		○
-기간제	○	○		○
○근태관리				
-공무원	○	○	○	○
-공무직	○	○	○	○
-기간제	○	○	○	○
○근무성적평가	○	○		○
○성과상여금 결정	○	○		○
○4대 보험 관리	○	○		

※ 위의 예시의 경우 업무 장소 및 업무의 성격, 근로조건 결정,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성 등 고려 본부-청-사업소로 구분 적용 가능(예시의 센터의 경우 업무 장소가 별도로 있으나,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고 근태관리만을 별도로 수행 중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

※ 위의 “○” 표시는 독립성이 있을 경우 기재한 예임



고용노동부 사례



1 고용노동부 조직 구성

- 고용노동부는 본부, 지방고용노동청(1차 소속기관), 지방고용노동지청(2차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고객상담센터 등으로 구성

2 고용노동부 사업장 판단 (본부, 6개청, 노동위원회, 고객상담센터)

- ◆ 고용노동부 본부(11동) : 하나의 사업장
- ◆ 지방고용노동청(1차 소속기관, 6개) : 각 지방고용노동청별로 하나의 사업장
 - 지방고용노동청(예: 서울청)에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지청(예: 서울강남지청)은 소속청(서울청)에 포함되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 노동위원회: 하나의 사업장
 - 중앙노동위원회(1개)와 지방노동위원회(12개)로 구성되지만, 이를 통틀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 ◆ 고객상담센터 : 하나의 사업장

1 본부

- △지방청·지청 및 고객상담센터 등 소속기관과 장소적으로 분리, △집행기관인 지방청 등과 달리 정책수립 등 독자적인 업무 수행, △인사와 복무관리 등도 다른 소속기관과 분리되어 수행

2 지방고용노동청(6개)

-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장소적으로 분리, △본부와 달리 근로감독(사법경찰), 고용센터 업무 등 독립된 집행 사무를 수행, △소속 직원의 인사와 복무관리 등을 고용노동청장의 권한으로 청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수행, △각 고용노동청으로 배정된 예산을 노동청 단위에서 운영·집행
-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지청은 장소적으로 소속 노동청과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청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권한과 업무 지휘·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직근 상위조직인 고용노동청과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

3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개, 지방노동위원회 12개로 구성)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기는 하나,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 자체의 독립성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속 직원의 인사와 복무관리 등을 본부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수행

4 고객상담센터

-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과 장소적으로 분리,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는 독립된 기관으로 고용노동 관련 질의회신 및 고용노동상담서비스 제공을 독자적 업무내용으로 수행하고, △소속 직원의 인사와 복무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

5 도급·용역·위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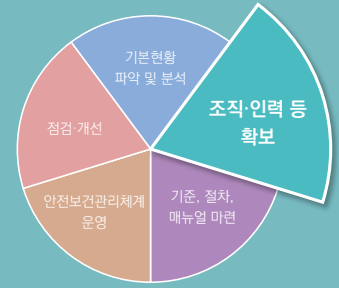
-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용역·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의 업무절차와 위험요인 등을 파악

● 지배·운영·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 예시

업무·사업명	기관	위험요인
소규모 도급 공사 (인테리어 등)	본부, 소속기관	추락, 전도, 감전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본부, 소속기관	감전 등
구내식당	소속기관	전도, 화상, 베임 등
미화	본부, 소속기관	전도, 추락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 포함)	본부, 소속기관	끼임, 추락 등
물탱크, 정화조 청소	소속기관	질식, 추락 등
전기 유지보수	소속기관	추락, 감전 등
보일러 유지보수 (점검 포함)	소속기관	폭발, 화재 등
전기, 소방, 가스 안전점검	소속기관	감전, 추락 등
기타(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청소, 무인경비)	본부, 소속기관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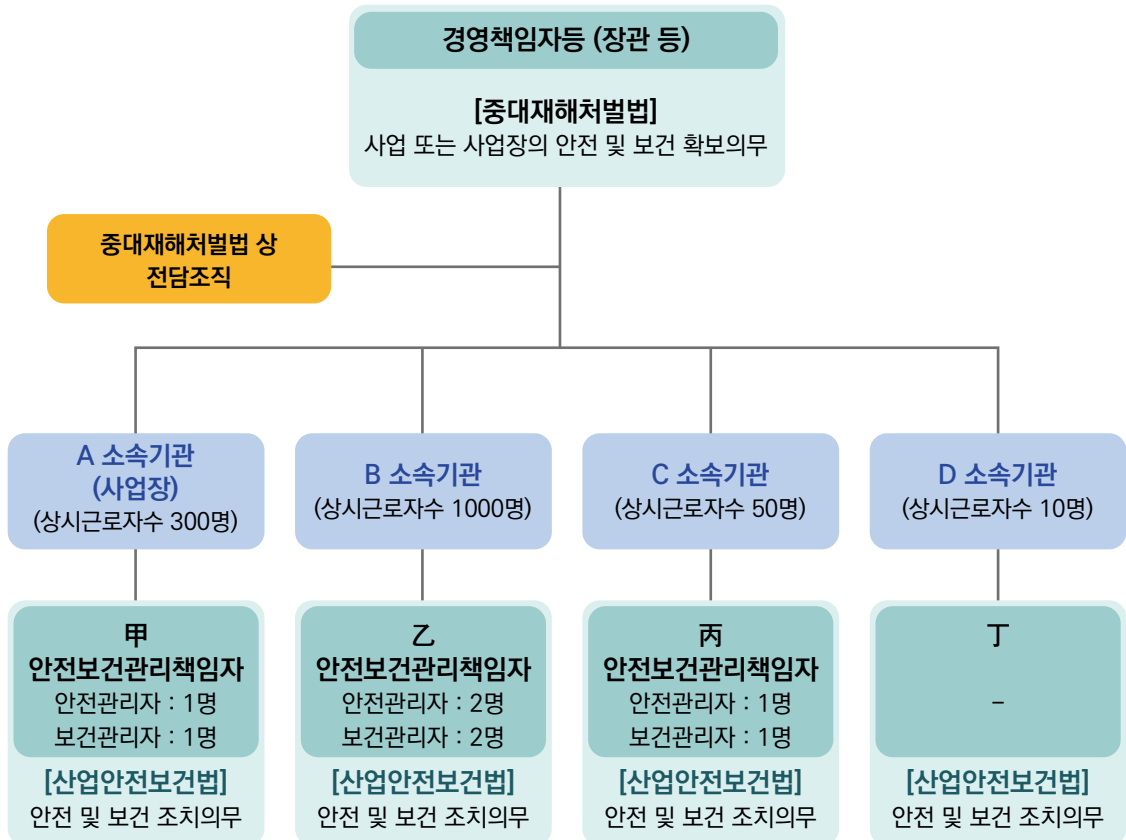
2 (2단계) 조직·인력 등 확보



현황분석 자료를 토대로 본부 및 소속기관별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 안전보건 업무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방법

본부: 안전·보건 전담조직, 본부 안전·보건 전문 인력 등 구성
 소속기관: 안전·보건 전문 인력 등 구성



1 본부 전담조직 설치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총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고,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전담조직 구성(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 ▶ 각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조 및 인원으로 배치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소속기관 안전·보건 활동 실행계획 수립, 계획 및 절차에 이행여부 점검 등

고용노동부 사례

- 본부 운영지원과에 중대법상 전담 조직으로 “안전보건계” 신설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 전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를 제외하고 2명 이상으로 구성)





전담 조직 설치 가이드



1 1단계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1 각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직접고용 근로자 총 수가 500인 이상인지 판단

- 하위 소속기관·위원회 등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각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전체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산정
- 직접고용이면, 공무원·공무직·기간제 등 고용형태는 불문하고 포함
- 직접고용이므로 용역·도급·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2 2단계: 산업안전보건법 상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3명 이상

1 각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해당 부처에 “사업장”이 몇 곳인지 우선 판단

※ 별도의 사업장 여부는 장소적 분리 여부, 인사·노무·회계 관리 독립성, 조직운영 및 업무처리능력,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단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32p “4.사업장 판단” 참조)

2 위 “1”에서 판단한 각 사업장” 별로 산안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인원(실제 선임 인원이 아니고 법상 선임 의무 인원)의 총합이 3명 이상인지 파악

◆ 공공행정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기준(각 사업장별 현업종사자* 수 기준)

- ① 50명~1천명 미만 사업장 :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명
- ② 1천명 이상~5천명 미만 사업장 :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명
- ③ 5천명 이상 사업장 :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2명, 산업보건의 1명

※ 중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500인 여부(1단계)를 판단할 때는 전체 근로자를 산입하나,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대상(2단계)을 판단할 때는 각 사업장별로 소속 현업 종사자(청소, 시설관리, 경비, 운전 등 업무 종사자, 자세한 내용 붙임1 참조) 수를 기준으로 함

3 3단계: 중대법상 전담조직 설치

- 1단계, 2단계 요건 충족시, 각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전체를 단위로 하는 전담조직 (2인이상) 설치

※ 구성 형태(국·과, 계, TF 등)는 중앙행정기관 현황에 따라 자율적 판단

2 사업장별 전문인력 등 구성

- 본부 및 소속기관의 현업업무종사자 현황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 ▶ 배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①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②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 ※ 현업업무종사자가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의무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 안전·보건 업무는 여전히 존재함에 유의
- 소속기관별 전문인력이 구성되면 본부 전담조직에서 마련한 계획, 기준·절차·매뉴얼 등에 따라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

i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기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산안법 제62조)
 - ※ 도급인 사업장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대상(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기관장, 단체장)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산안법 제15조)
 - ※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산안법 시행령 [별표2])
 - **(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산안법 제16조)
 -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두어야 함(산안법 제17조)
 - ※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산안법 시행령 [별표3])
- 현업업무종사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산안법 제17조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기준

■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자를 보건관리자로 두어야 함(산안법 제18조)

※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산안법 시행령 [별표5])

- 현업업무종사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제5항)

■ **(산업보건역)** 근로자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 등을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법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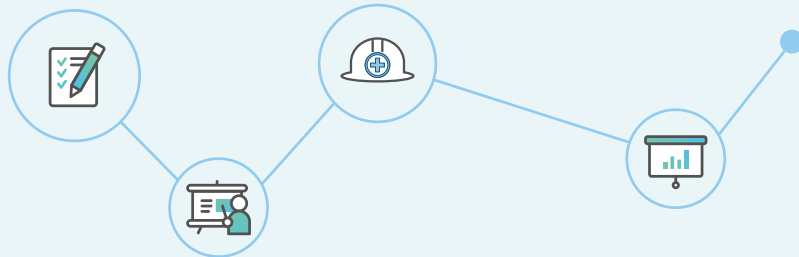
※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임의무 발생(시행령 [별표5])/외부위촉 가능 (시행령 제29조제2항)

- 다만, ①「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②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업업무종사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산안법 제2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현업업무종사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산안법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세부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안전보건책임자 등 선임 대상 검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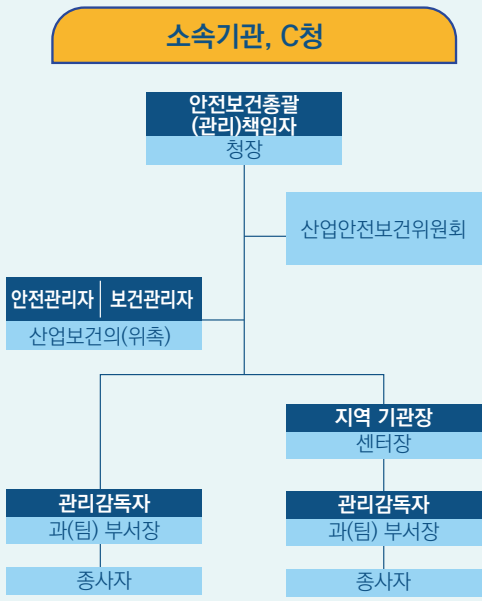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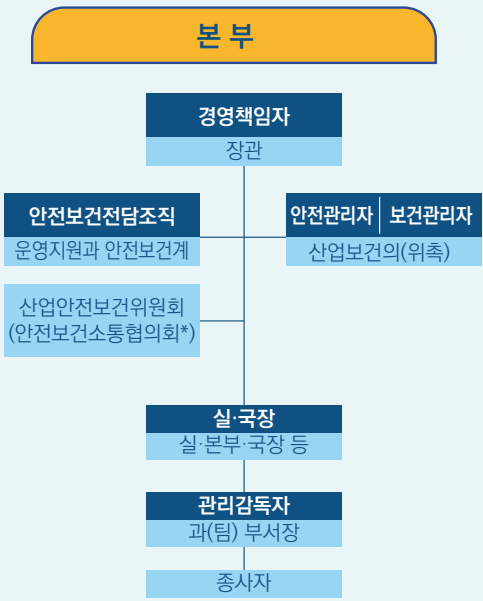
종사자 현황 파악 자료를 토대로 선임대상
사업장(본부, 소속기관)별 법 적용 파악

구 분	현업 종사자 수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기관장)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기관장)	관리 감독자 (부서장)	안전 관리자 (선임)	보건 관리자 (선임)	산업 보건의 (위족)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안전 보건 관리 규정
본부	60	-	x	o	o	o	o	x	x
A청	55	-	x	o	o	o	o	x	x
B청	103	o	o	o	o	o	o	o	o
C청	40	-	x	o	x	x	x	x	x
사업소	20	-	x	o	x	x	x	x	x
고객센터	10	-	x	o	x	x	x	x	x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경우 도급인 사업장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현업근로자 기준이 아님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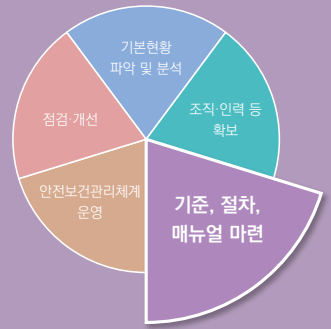
●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체제 (예시)



* 본부 현업업무종사자가 100인 미만의 경우 안전보건소통협의회(예시)를 두어 부처 전체 직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소통 창구로 활용

구분	직책 등	주요 업무내용
경영책임자	장관	· 부처 전체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본부: 장관 소속기관: 청장, 사업소장	· 단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조62조에 관한 업무
지역 기관장	센터장	·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부여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예산 편성·집행 업무 포함)
관리감독자	현업종사자 직접 관리하는 과(팀)장 등 부서장	· 부서 수행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관한 업무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관련 업무(예산 집행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업무 포함)
안전보건 전담조직	본부 안전보건 전담조직	· 부처 전체(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 안전보건 활동 매뉴얼, 가이드, 기술지침 등 운영 규정 제·개정 ·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법령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행 등 실태 점검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자	본부: 안전·보건관리자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 사업장별 안전보건 업무 관리
산업보건의	위촉	· 근로자 건강관리,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비대상 기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비대상 기관의 안전보건 업무 관리

3 (3단계)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안전보건 활동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제도이행 기반을 구축합니다.

방법

본부: 경영방침, 목표 수립, 목표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마련
 소속기관: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이행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방침 수립
- 본부, 사업장별, 사업부서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

● 목표 설정 예시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위험요인 개선조치 건수
- 산업재해 감소율
- 종사자 의견 건수
-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 안전보건 교육 실시 건수
-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i 중대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기준, 절차, 매뉴얼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 기간 기준(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안전보건경영방침

〇〇〇은 직원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모든 직원과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3.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일터와 시설물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제공한다.
5. 발굴한 유해·위험 요인은 반드시 개선한다.
6. 모든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에게 우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〇〇〇〇년 〇〇 월 〇〇 일

〇〇〇〇〇장관 (서명)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 업무 분야별 근무환경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 본부의 전담조직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소속기관은 이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함
 - * 예시
 - ① 추락·끼임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 설치
 - ② 고객응대 업무가 있는 경우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 마련
 - ③ 유해인자 노출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작업환경개선
 - ④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있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 ⑤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 하는 경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 ▶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적절한 개선활동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현재의 안전·보건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안전·보건조치 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여야 함
- 대책의 적절성, 개선 진행상황 및 개선 완료여부는 경영책임자(본부 전담부서)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4~9.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본부의 전담조직이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소속기관은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 가능

※ 최초 위험성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

i 위험성평가를 활용한 운영(안)

■ **(본부 전담부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최초평가 → 필요시 수시평가 → 매년 정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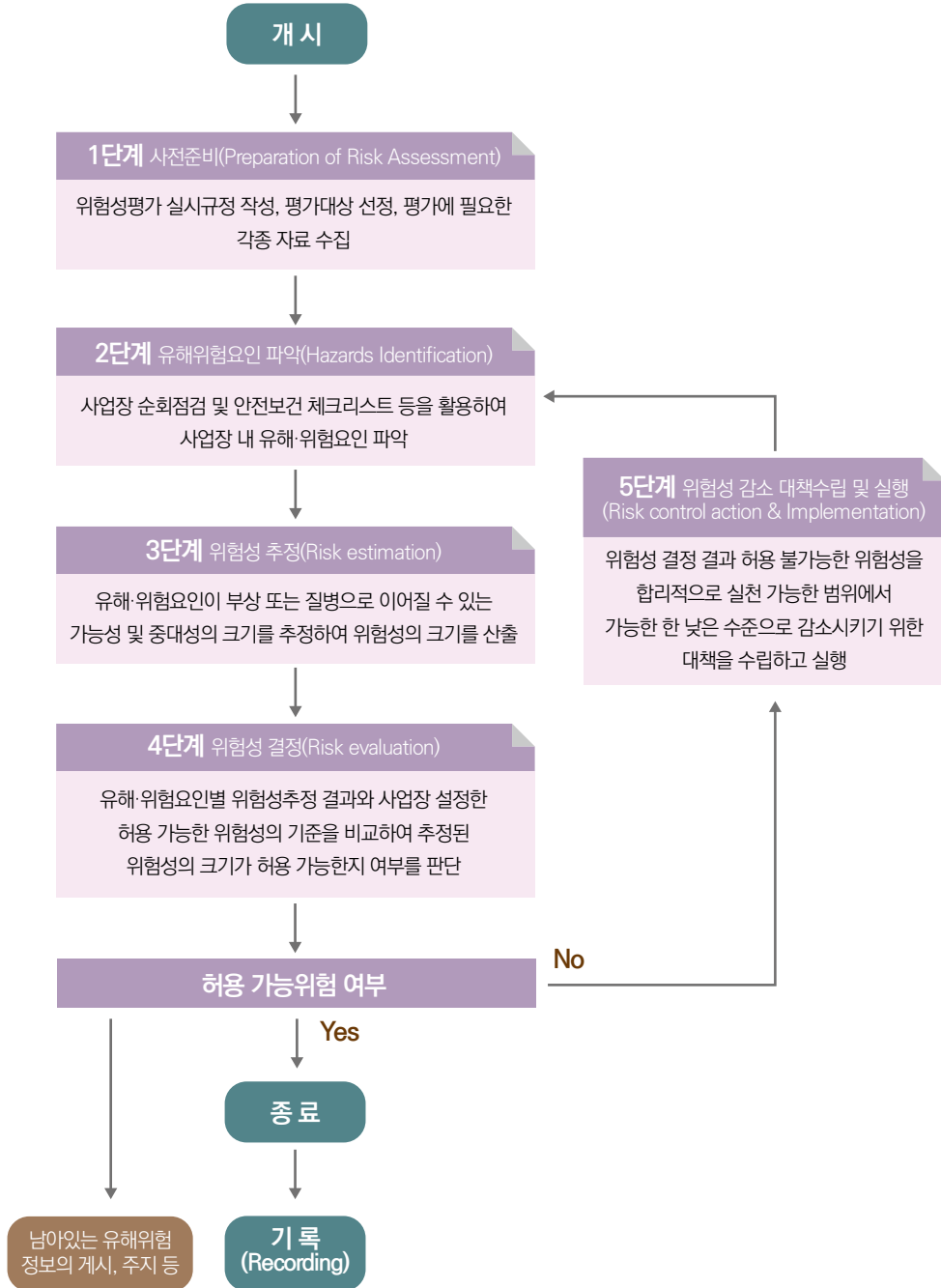
구분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실시 시기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 실시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소속기관)**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필요시 외부 기관 도움)

■ **(본부 전담부서)** 소속기관 등이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반기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도



7 가지 일반적인 작업장 안전 위험



1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를 식별하여 직원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추락 보호 프로그램을 검사·확인합니다.



불량한 시설관리

어떤 물건이나 유출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불러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고, 각 교대근무 종료나 금요일 오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정리합니다.

2

3

전기·전선작업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설치·해체, 정비 점검 등의 작업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원연장용 코드는 장시간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노동자들이 빨리 일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주의가 산만한 운전을 할 때 다른 작업자를 다치게 합니다. 또한 굴착기 등 작업시 다른 작업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며, 종사자가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4

5

LOTO(LOCK OUT / TAG OUT) 출입통제 절차(끼임 사고)

출입통제 절차는 끼임 사고에 따른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실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화학물질

화학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의 어떤 성분인지, 어떤 목적으로 구매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6

7

밀폐공간

밀폐공간은 허가 없이 작업을 하거나 위험성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대책(예시)

1 실험실 유해위험요인 및 핵심 안전보건관리

- 실험실은 화학, 물리, 생물, 의학 등 다양한 연구 또는 교육을 위해 시험이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시약, 기자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실험실의 작업 조건과 환경은 각 연구 목적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짐
- 실험실의 유해·위험요인은 화학적 위험, 물리적 위험, 생물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등으로 구분

● 위험요인

화학적 위험

누출, 폭발, 연소, 유해물질 접촉

생물학적 위험

세균 및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미생물 감염




물리적 위험

방사선노출, 극저온노출, 자기장노출

인간공학적 위험 (작업요인)

신체적부담으로 인한 염좌, 근골격계질환,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

● 주요 안전대책

구분	안전대책	
화학적 위험	[화학약품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하는 물질이 올바른지 라벨을 주의깊게 읽고 작업이 끝나면 뚜껑을 닫음 · 열이 발생하는 물질을 감시 · 혼합금지(호환성이 없는)물질은 분리 · 개인보호구 착용 · 화학약품을 운반 시 박스 등 안전한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운반 	
	[화학약품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 무기물질 별로 구분하고 종류를 달리하여 증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덕트 시설 연결 · 화학약품 저장장소는 화학약품 성질에 맞게 설계 배치 · 필요한 양의 화학약품만 실험실 내 저장 · 빛, 공기, 습기 등에 민감한 화학약품은 보관 방법을 달리하여 보관 	
	[환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는 실내 유해 화학물질의 수치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 ·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문이나 창문을 열고, 작업대 가까운 곳의 벽이나 천장에 배기장치 설치 · 이동식 배기장치가 있는 경우 작업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이나 먼지(분진)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깝게 설치 · 흡 후드는 실험실에서 유해물질의 증기를 예방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실험은 후드 내에서 수행 	

구분

안전대책

생물학적
위험

- 실험 전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충분히 숙지
- 취급하는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의 위험도를 고려한 시설의 생물 안전등급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실험
-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실험복, 장갑, 위해도 등급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
-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한 감염성물질의 취급은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와 같은 물리적 밀폐가 가능한 실험장비에서 수행
-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는 생물재해표시 (Biohazard)를 부착



물리적
위험

[자기장으로부터 보호]

- 자기장으로부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물과 사람은 5가우스(G)라인 밖에 위치하여야 함
- 5가우스 이상 발생 시킬 수 있는 자석이 있는 모든 방은 문에 경고표지를 갖추어야 함 (출입금지 구역은 5가우스라인 안의 영역(방과 복도 등)을 포함
- 심장박동기나 기계적인 작동 보형물을 지닌 사람은 이 영역의 출입을 제한

[극저온으로부터 보호]

- 보호 장갑과 얼굴 보호구는 극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착용

[방사선 안전]

- 방사선 시설 설치 기관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취급 등록 및 취급허가 관리
- 방사선 시설, 취급, 보관, 교육, 건강진단, 응급조치,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구비



인간
공학적
위험
(작업요인)

- 적정 중량초과 물건 취급 시 2인 이상 함께 작업, 가급적 중량물의 무게를 줄여서 작업
- 실험실 바닥은 탄력성과 내충격성이 뛰어난 재료 사용
- 바퀴 고정장치, 충격흡수재 등 안전장치가 있는 손수레 및 이동대차 사용
- 작업용도에 알맞은 인간공학적 디자인의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

[건강관리]

- 실험실 연구원 대상 배치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실시



실험실 연구원 관련
KOSHA GUIDE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KOSHA Guide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 확인 가능




- ① (H- 4-2012)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 ② (H-57-2015)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 ③ (W-21-2019)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④ (W- 3-2021) 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⑤ (G-82-2018)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⑥ (P-76-2011)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내의 작업 및 설비안전 기술지침
- ⑦ (H-138-2021) 채취 가검물에 의한 오염방지에 관한 지침

2 화물 집배업무 유해위험요인 및 핵심 안전보건관리

- 화물 집배업무는 차량에 화물을 상차, 하차하는 작업, 작업장 내에서 컨베이어 등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작업, 화물을 보관 및 정리하는 작업, 화물을 수취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업무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와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짐

● 공정 흐름별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간선차량 상·하차 작업	분류장 도크 접안중인 차량과 도크 사이로 도크위에서 작업중인 근로자 추락	· 간선차량이 도크에 접안하면 차량이 도크에서 이안되지 않도록 바퀴 하단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차량 유동방지를 위한 고정 실시	
	적재함을 열던 중 쏟아진 화물에 맞음	· 간선차량 적재함을 열 때는 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한쪽 문을 고정한 상태로 다른쪽 문을 서서히 개방 · 망, 로프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고정	
분류작업	반복되는 하차작업으로 어깨와 허리 통증	· 화물을 꺼내어 컨베이어에 올려놓는 작업을 할 때는 주기적으로 작업자의 작업방향 등을 바꾸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작업 · 스트레칭 및 적절한 휴식 실시	
	컨베이어 넘어가려던 근로자 신체 일부 끼임	· 컨베이어 반대방향으로 넘어갈 경우 반드시 건널다리를 사용 · 건널다리 통로가 컨베이어 벨트이동면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비상정지스위치를 사용하여 컨베이어가 멈춘 후 안전하게 넘어가기	
	화물이 적재되 대차(롤테이너)밀면서 이동 시 진동에 의해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 충격	· 대차(롤테이너)사용 시 시야가 확보될 정도까지만 화물을 적재하고 반드시 적재함 문(front bar)을 걸속시킨 상태에서 이동	
	상·하차 작업 중인 지게차와 부딪힘	· 지게차 작업 시 작업구역을 별도로 분리하고 근로자 출입이 있는 곳에서는 유도자 배치, 신호에 따라 작업 실시	
	물류창고 컨베이어 하부 청소작업 중 감전	· 컨베이어 접지 조치 철저 -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금속제 외함 및 철대에 접지 실시 · 컨베이어 절연상태 관리 철저 - 금속제 외함, 전선 등은 전로부터 항상 양호한 절연상태 유지 및 주기적 저항측정관리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집배송 작업	화물이 적재되 롤테이너가 미끄러지면서 근로자와 부딪힘	· 롤테이너에 화물을 임시 보관 시 경사로에 위치시키지 않음 · 이동방지를 위해서 고정장치(바퀴 스톱퍼)를 사용	
	계단을 급하게 오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짐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반드시 이동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반드시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이동	
	중량물 혹은 장착화물 등을 과도한 힘과 동작으로 운반	· 중량물, 장착화물 등을 취급 시 리프트게이트, 지게차, 대차 등을 활용하여 운반	



3 급식실 유해위험요인 및 핵심 안전보건관리

- 급식실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미끄러짐, 부딪힘, 뜨거운 국이나 기름, 열 기구에 의한 화상, 식자재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등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조리실 내 부족한 환기에 의한 유해물질 노출도 이뤄질 수 있음

●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위험요인	안전대책
부딪힘 넘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정리정돈을 통해 안전통로 확보 · 작업 후 반드시 트랜치 덮개를 덮음 · 넘어짐 주의 경고 표지판 부착 · 동료와 위험요인 공유 · 바닥물기, 기름기 및 떨어진 음식은 바로 제거 · 사용 완료 한 호스 정리 정돈 · 급식실 내 급하게 뛰지 말 것 
절단·베임·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임 방지 장갑 등 보호구 착용 · 식기세척기 등 작업 전 안전장치* 정상가동 여부확인 * 비상정지장치, 리미트스위치, 덮개 등 · 즉시 전원차단 가능한 비상정지장치 설치 
이상온도 접촉 (화상, 열상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스팀 압력 공급 금지 · 회전 조절 핸들 고정장치* 재설치 * 회전식 솔이 흔들림 등에 의하여 핸들 고정장치(안전핀)가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함 · 경고표지판 부착(화상주의 등) · 팔토시, 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조리 시 적절한 안전거리 유지 
근골격계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와 위험요인 공유 · 도움을 청해 2인 이상 함께 작업 ·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 적절한 휴식시간 분배, 교대작업 등 업무강도 완화 
유해물질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실 환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 급식실 내 유해가스* 감지기 설치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 마스크 착용 · 기타 세척제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교육 * 해당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활용 · 가능한 유해성이 낮은 제품 선정 

㉓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작업별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직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4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산안법 제75조)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 그 외 종사자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의 위험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
 - * 예시
 - 1 제안제도 운영
 - 2 인트라넷을 통한 게시판 운영
 - 3 사업장별 익명 신고함
 - 4 아차사고 발굴 제도 운영 등

● 아차사고 발굴

- **(의의)** '아차사고'란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 **(절차 예시)**
 - ① 아차사고 보고(작업자→ 관리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② 아차사고 원인 분석(작업자 & 관리자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③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작업자·관리자 참여)
 - ※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에는 사업장 내 동종·유사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
 - ④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보고(소속기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본부)
 - ⑤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지시(본부 전담부서 → 소속기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4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함(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 ① (소속기관) 유해·위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매뉴얼 마련
- ② (본부 전담부서) 소속기관의 매뉴얼의 적정성 검토
 - 사용 기계·기구, 시설물 및 제조·취급·저장 물질 등을 고려한 사고 시나리오 작성 여부
 - 보고절차, 경보체계, 대피절차, 비상연락체계, 대피전 안전조치 필요한 주요 설비 및 절차, 구조·응급조치 절차, 비상대응 관련 시설·장비 관리 등 적정성
- ③ (소속기관) 주기적 훈련, 매뉴얼 적정성 검토
- ④ (본부 전담부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확인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시 대응 절차도



-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기계·기구별 비상정지, 전원차단 등에 대한 방법 등은 세부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명시
- ▶ 매뉴얼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도급·용역·위탁 받은 자의 근로자 포함)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도급·용역·위탁 시 소통체계 부실로 대처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
- ▶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 도급인에 해당하여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하여야 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5호), 이를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함

구분	업무내용
① 상황 전파 및 작업중지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 즉시 작업중지
② 초기대응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필요시 2차 피해방지 위험요인 제거)
③ 긴급대피	◦비상대피장소 긴급대피
④ 신고 및 보고	◦상황 발견자·관리감독자 등이 119신고 및 응급처치 시행 ◦관할 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본부 전담조직 등에 보고
⑤ 현장 보존	◦소방서, 산재예방 근로감독관 등의 현장 보존 지휘 협조

- **(구호조치)** 119 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구분	업무내용
① 신속한 연락과 처치	① 재해발견자는 피해 상황 파악/ 응급조치(전원차단, 기계정지등) ② 119신고 및 비상연락체계 전파
② 현장응급처치시행	① 응급처치 시행 등

- **(추가피해방지 조치)**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

구분	업무내용
① 재해 원인조사	① 소속기관별 사고조사 → 본부 전담조직 검토
②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공유	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즉시 개선 ② 사고 원인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종사자 등) ③ 조치 결과를 해당기관장, 관계 행정기관 등에 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산안법에 따른 조치 사항

☞ 소속 근로자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재해자 구호조치 등을 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후송)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

2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가스,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 ▶ (보고사항) ①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조치 및 전망, ③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 **(제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제외

☑ 산업재해 사실 기록 및 보존 사항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4 재해 재발방지계획의 수립

-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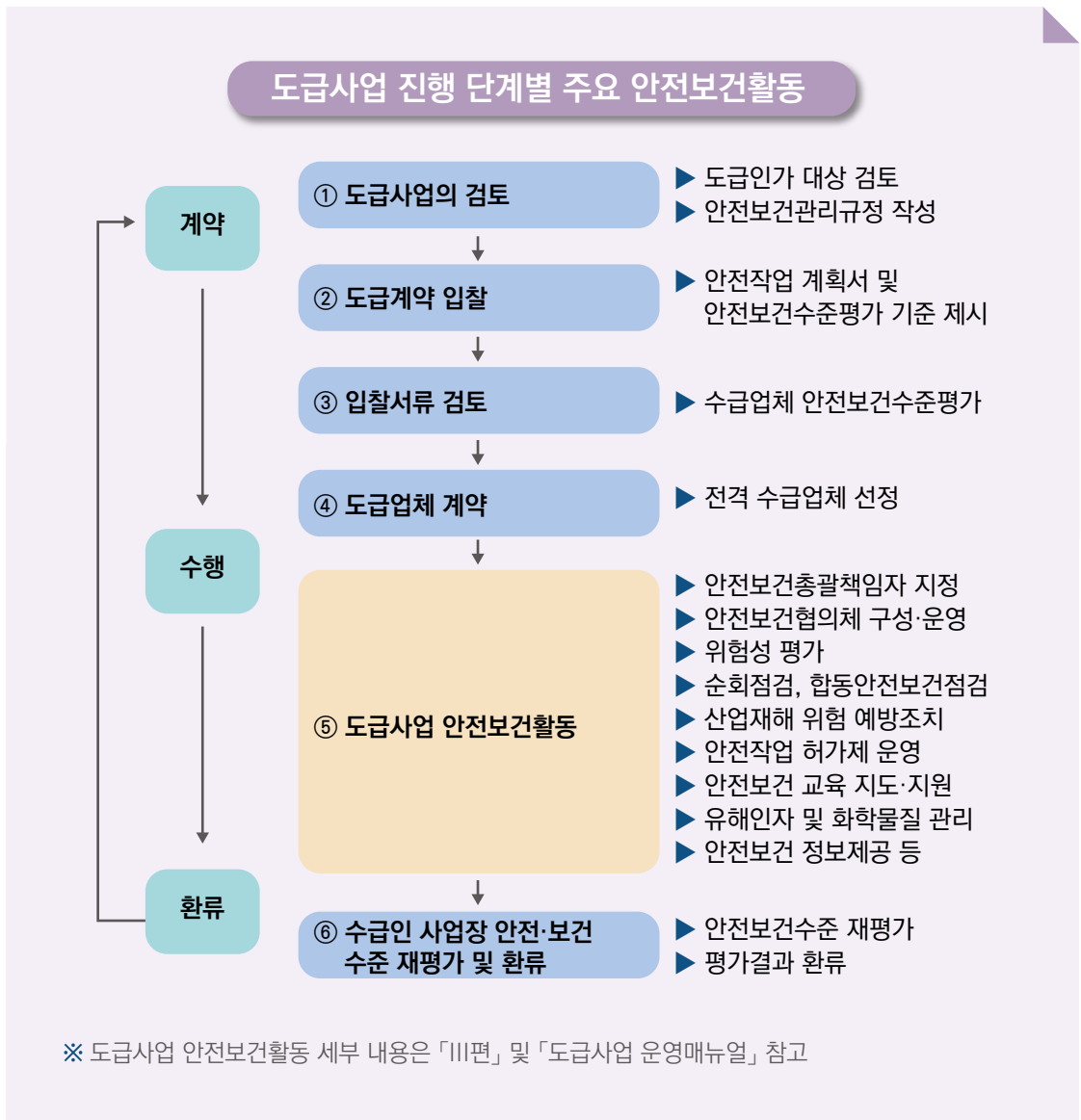


-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공유

5 도급·용역·위탁 업무 기준

- 도급·용역·위탁 업무는 ①도급사업 사전검토 및 수급인 선정, ② 도급사업 전 위험사항 검토, ③도급사업의 순으로 이루어지며,사업 진행 단계별 적절한 안전보건활동이 필요함
- ▶ 아래의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을 고려하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및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본부 전담부서) 기준 및 절차 마련 → (소속기관)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행
→ (본부 전담부서) 주기적 확인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 공사발주 및 도급사업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자세한 사항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1.12월)」 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검색:도급사업)

-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을 요구해야 함
- ▶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해 수급인이 적정 수준의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입찰단계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도급 계약 시 명시할 사항

-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안전보건 점검
- 안전보건 정보 제공
- 공사기간 등 준수
- 위생시설 등의 협조, 안전보건조치 이행, 산업재해 현황 제출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안전보건 수준평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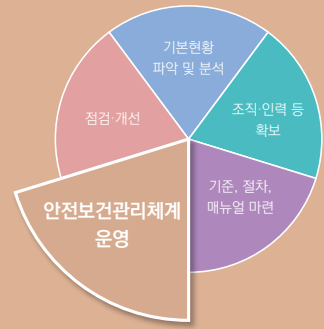
● 사업장

회사명(수급인)		사업명	
----------	--	-----	--

● 평가항목 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취득점
합 계		100	
관리체제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수준	10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정성	10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4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구체적인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합니다.

1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이행

- 본부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목표에 따라 예산·시설 투입계획, 각 안전보건 활동 실행시기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이행해야 함

안전보건 추진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 1 안전보건 추진계획은 부처의 경영방침과 안전보건목표를 구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2 안전보건 추진계획은 세부목표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 예산 및 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안전보건 추진계획은 안전보건법령 제·개정사항, 위험성 평가사항, 자체 점검 결과 (본부→소속기관) 및 종사자 의견수렴, 안전점검,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법정 의무사항 등 모든 안전보건사항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은 소속기관 관할기관이 수립한 계획 및 절차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이행



2 교육, 훈련

- 안전보건활동의 주체인 종사자 보호의 가장 기본은 교육으로 계층별(신규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위험요인별, 업무별로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 ▶ 모든 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함
 - ▶ 이와 더불어 부처의 안전보건 활동의 절차·매뉴얼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축된 안전보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
- ①교육 목적, 범위, 대상, 방법 및 인원 ②교육의 종류, 과정, 교육과목 및 내용, ③교육 시기, 횟수 및 시간, ④교육방법 및 강사, ⑤교육 성과측정 및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 산안법에 따른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최저 교육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시(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 2시간	· 16시간
	일용	· 1시간	-	· 1시간	· 2시간
특고	일반	· 2시간	-	-	· 16시간
	단기·간헐	· 1시간	-	-	· 2시간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체험교육장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권역별 안전체험교육장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체험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안전체험교육장

교육장	소재지	운영기관	연락처
중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032-510-0647
호남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병목로 219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061-949-8712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454번길10-7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051-520-0557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110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053-609-0575
충청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1714-77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041-881-9230
제천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3	안전보건공단 충북광역본부	043-645-6802~3

※ (이용방법) 인터넷 사전예약(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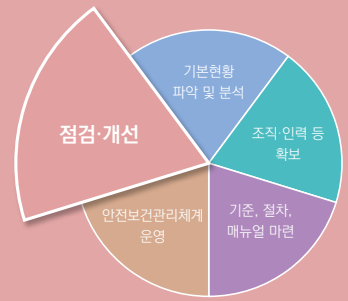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인정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기관	연락처	이용방법	교육과정
1	울산안전 체험관	울산시 북구 산하중앙2로 87-33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052- 279- 6588~9	인터넷 (http://fire.ulsan.go.kr/ safety/)	근로자 대상 체험교육과정 (2시간)
2	엣스퍼트 안전체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공덕동) LG마포빌딩 6층 엣스퍼트 TL센터	(주)에스앤아이 코퍼레이션	02- 6924- 5695	유선 혹은 전자메일 (FMA@sni.co.kr)	건물관리업 근로자 대상 체험교육과정 (4시간)
3	한라시멘트 안전교육 센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길 225(본관동1층)	한라시멘트(주)	033- 530- 1751~3	유선 혹은 팩스 (팩스 :033-530-1987)	근로자 및 학생 대상 체험교육과정 (2~3시간)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기관	연락처	이용방법	교육과정
4	평택 안전체험 교육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2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070-5007-5134	인터넷 (http://www.iwest.co.kr)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소통광장) 안전체험장신청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2시간)
5	LGD 파주안전학교 체험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열지로 245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내)	엘지 디스플레이 (주)	031-933-0668 (031-933-0789)	전자메일 (gayoung_jo@lgdisplay.com 및 참조 hyerim0730@lgdisplay.com)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체험교육과정 (2~4시간)
6	오창공장 안전체험 교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81 (주성리)	(주)엘지화학	043-219-7173	유선 혹은 전자메일 (yglee@lgchem.com 및 참조 aran_c@lgchem.com)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2.3시간)
7	안전체험 교육장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169-88번지	한국안전 체험교육원 협동조합	031-8077-2641	유선 혹은 팩스 (팩스 : 031-8077-265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체험교육과정 (3.8시간)
8	LG U+ 안전체험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가정동) LG U+ 대전R&D센터	(주)엘지유플러스	-	전자메일 (nwsafety@lguplus.co.kr 및 참조 jamiejang@lguplus.co.kr)	근로자 및 학생 대상 체험교육과정 (2.3~4시간)
9	kt service 남부 안전 체험교육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60 (괴정동, KT인재개발원) 제1실습관 3층	주식회사 케이티 서비스남부	1588-8090	인터넷 (hrd.ktservice.net) 문의 후 전자메일 제출 (hrd@ktservice.net)	체험교육과정 (5시간*) * 안전체험 3시간, 통신주 등주체험 2시간
10	종합안전 체험교육장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 태안발전본부 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070-5007-3934	인터넷 (http://www.iwest.co.kr)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소통광장) 안전체험장신청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2시간)
11	생산기술원 안전체험장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열지로 222 (청호리 19-1), 엘지전자 생산기술원	엘지전자(주)	031-8054-2125	전자메일 (seungwon.jung@lge.com)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3시간)
12	SHE 체험교육관 (청주캠퍼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향정동)	에스케이 하이닉스(주)	043-907-6904	전자메일 (jiyung.seo@sk.com 및 참조 juyeon.an@sk.com) 또는 팩스 (팩스 : 031-645-8049)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2.3시간)
13	LGD 구미 안전학교 체험관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2로 235 진평동, LG 디스플레이 내)	엘지디 스플레이(주) 구미공장	054-717-0988	전자메일 (zero_hyun@lgdisplay.com 및 참조 aa09@lgdisplay.com)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체험교육과정 (2.4시간)
14	롯데하이마트 VR안전체험 교육장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533번길 8	롯데 하이마트(주)	02-2050-9828 또는 031-635-9457	전자메일 (himart_scm@lotte.net 및 참조 eunmi_kim@lotte.net)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3.3.5시간)
15	하동발전본부 안전문화 교육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경제산업로 509 (하동발전본부 내)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	070-7713-1046	전자메일 (back4good@kospo.co.kr)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4.2시간)

※ 교육비: 교육장별로 교육비가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요합니다.

5 (5단계) 점검·개선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이행수준을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1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점검

- 주기적인 기관장 주재 소속기관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점검 및 문제점 발굴이 필요함
- ▶ 이와 더불어 본부 전담조직에서는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이 계획 및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획 및 절차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여야 함
 - ※ 본부 전담조직이 소속기관 점검 시 중대법에서 점검토록 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점검(참고 점검표 활용)



중대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안전보건 활동

-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안전보건관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 기간 기준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관리(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중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중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2 필요한 조치 및 개선

- 소속기관 점검 시에는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적정성 확인과 더불어 조직·인력, 예산·시설 등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기준·절차의 문제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 예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업무가 충실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였는지 추가 확인 ② 현장 점검 시 유해·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발견된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문제인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았는지 추가
- 점검시 발견된 문제점은 누가·언제까지·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기한 내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까지 관리하여야 함
- ▶ 또한,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중대법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의의) 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②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 (예산편성 기본원칙)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대체·통제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의미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
 - 또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함
- (용도에 맞게 집행)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



자체점검 시 활용 점검표(예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 기관명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1.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항 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이행 (실시시기, 지표 등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2.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충실 이행

항 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 등 업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 등 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도급사업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자(위탁 시 안전관리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적격품 선정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적격품 선정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보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항 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절차에 따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성평가 참여자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공지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시기 및 대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평가: 매년(계획에 따른 시기), 전체 작업 대상 - 수시평가: 아래 계획 실행 전 <p>〈수시평가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본부 전담조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방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시 총괄·관리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보좌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유해·위험요인 파악 누락이 없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개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 개선여부 확인 				

4. 종사자 참여 활성화

항 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절차 운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 신고함 설치 상태 - 내부 직원에 참여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제안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차사고 발굴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5.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항 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 수행한 도급·용역·위탁 업무 기록·관리				
● 도급·용역·위탁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 적정기간 기준 준수				
● 도급·용역·위탁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 적정기간 보장 등				
● 도급·용역·위탁 완료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평가결과 환류)				

6. 재해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신속 대응

항 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 대응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여부				
● 비상조치계획에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및 비상상황 발생별로 구분하여 수립				
● 비상조치계획에 소속기관 근무환경 상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				
●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조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				
●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				
●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				

7. 안전보건 교육 실시

항 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내부 절차·기준·매뉴얼) 교육				

8.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항 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 관리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및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부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관리, 법령 고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산재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 및 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정적으로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작업장 순회점검(1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1회/분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와 근로자 각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건설업 등 산업재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기본안전보건대상 수립 및 이행 확인) ※5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50억원 이상)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사용 시 안전인증 취득 여부 ※크레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기계 등 안전검사 실시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경고표지 부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함유 물질 자재에 대한 석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함유 물질 자재 해체제거작업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 도급 여부) 				
근로자 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 측정 및 일반·특수건강진단 				

항 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및 통로 전도방지 조치 여부 ※ 미끄럼방지 조치(논슬림테이프 부착) 설치, 바닥 청결, 조도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사다리 통로 확보 ※ 견고한 구조, 전도방지 조치,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및 덮개 등 설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곳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여부 - 비계 설치 후 작업발판 조립, 이동식비계, 말비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보수 작업 등 ※ 방호장치(출입문 인터록 장치 등) 정상 작동, 작업 시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포지판 부착 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건관리 ※ 사전허가(프로그램 작성), 출입금지 표지판, 농도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감시 인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 청소업무 ※ 작업전 로프, 고리, 달비계 등 체결상태 확인, 로프 외 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 체결, 로프 및 구명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 등 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기계 등의 전동기 회전체 등에 덮개 설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 콘센트 등 접지 연결 여부 				
기타 안전보건관련 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일자			점검자	

※ 반기1회 이상 점검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III

도급·용역·위탁 사업 산재예방

1. 시설물 등 유지·보수
2. 실내건축
3. 기계·설비 교체·설치



III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재예방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장소 등에서
도급·용역·위탁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 장에서는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재예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내실 있는 산재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종류별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주요 도급·용역·위탁 사업

	업무·사업명	위험요인	주요 작업 설비
1 시설물 등 유지·보수	건물 외벽 보수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용접기
	지붕방수	추락	강관비계, 이동식크레인
	저수조 청소	추락, 질식	고압살수기
	외부 유리창 교체	추락	고소작업대
	전광판 보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2 실내건축	청사 이전 및 통신공사	추락, 화재	이동식사다리, 고소절단기
	인테리어 공사	추락	이동식비계, 말비계
3 기계·설비 교체·설치	보일러 버너 교체	화재·폭발	산소절단기, 고속절단기, 코어드릴
	냉각탑 상부 난간 설치	추락, 화재·폭발	이동식크레인, 용접기
	실험실 환경 개선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말비계
	차광망 설치	추락	이동식사다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사다리

1 시설물 등 유지·보수



1 건물 외벽 보수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 배관 용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 배관 용접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기작업 시 우레탄폼 주변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및 소화기 비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 배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 배관 설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소작업대(차량 탑재형) 사용을 권장 고소작업대 사용 시 4면에 안전난간 설치, 정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경질우레탄 폼 등 단열재 주변 화기작업

외벽 경질우레탄폼 주변 배관 용접 작업 시 화재 위험



용접 불티 비산방지포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안전점검 포인트

- 화기작업 시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 화기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 제거
- 밀폐된 공간에서 유증기 등 인화성 증기발생 위험작업 시 충분한 환기
- 인화성물질 취급작업과 화기취급작업 동시작업 금지
- 소화설비 및 피난통로(유도등, 비상조명, 피난유도선 등) 확보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형) 이용 작업

외벽 판넬 및 배관 작업 시 고소작업대 전면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짐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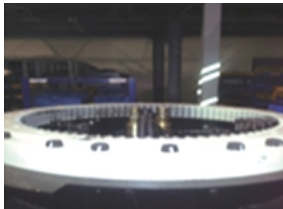
고소작업대 전면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점검 포인트

- 고소작업대 제원을 확인하고, 정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 아웃트리거 정상 펼침상태를 확인하고, 지반 침하방지조치 및 받침대 확보
- 작업대 4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 주요 구조부 외관상태 확인 유무(붐, 턴테이블, 붐 인출 와이어로프의 균열 등)

턴테이블 볼트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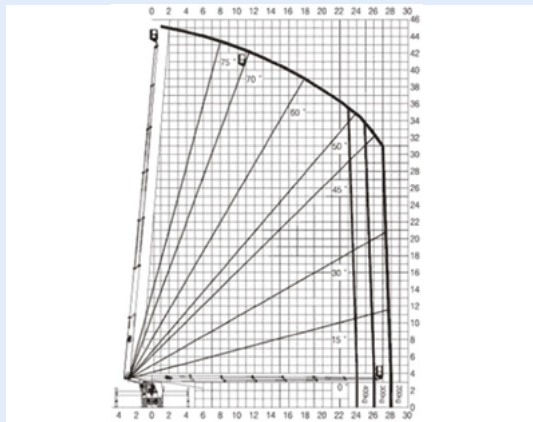
붐 인출 와이어 점검



붐, 작업대 연결부 등 점검



- 고소작업대 제원에 따른 정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5톤 고소작업대 작업반경도
(후방, 아웃트리거 최대 인출 시)

2 지붕방수

☑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비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강관비계 설치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관비계 조립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 안전대 착용 강관비계를 조립하면서 경사버팀대 및 벽이음을 신속히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비계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강관비계 해체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줄비계 해체작업 시 작업발판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안전대 착용 경사버팀대 및 벽이음 선해체 금지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쌍줄비계 조립 작업 시
떨어짐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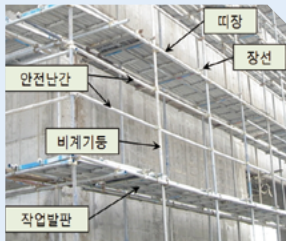


쌍줄비계 조립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안전점검 포인트

- 강관비계 설치·해체 시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 비계의 좌굴 방지를 위해 벽이음(가로 5m 이내, 세로 5m 이내), 버팀대 설치
- 벽이음, 가새는 가능한 나중엔 해체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가새, 버팀목 설치



① 비계기둥, 안전난간 해체

② 작업발판 해체

③ 띠장, 장선 해체

④ 벽이음 해체

③ 저수조 청소

☑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조 바닥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사다리를 타고 저수조 바닥으로 이동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를 안전블록 등에 고정한 상태에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조 내부(밀폐공간)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조 내부 청소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저수조 내부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산소(가스)농도 측정기 등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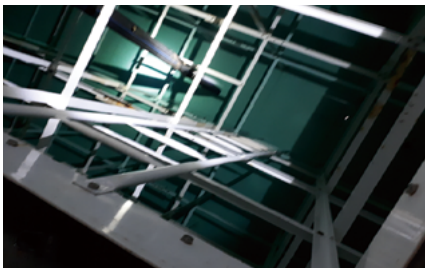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밀폐공간(저수조 내부)에서 청소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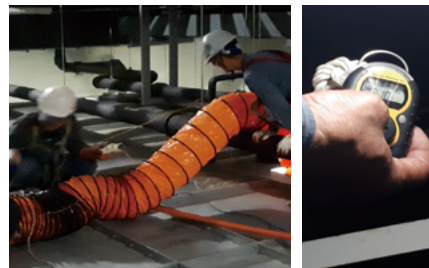
고압살수기 엔진 연소 시 일산화탄소(CO) 발생으로 질식 위험
 ☞ 고압살수기 즉시 반출 조치



저수조 내부 밀폐공간에서 질식위험



작업 전 저수조 내부 환기 조치 및 산소농도 측정



안전점검 포인트

- 밀폐공간에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부착
- 밀폐공간 출입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① 산소농도 범위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② 탄산가스의 농도 1.5퍼센트 미만
 ③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④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

- 작업 전·작업 중 환기 실시
- 작업 전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안전보건 교육 실시
-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구명 밧줄, 구조용 삼각대 등 구비



-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고 외부에 배치하고 비상연락체계(무전기 등) 유지

저수조 상부 고소작업

저수조 상부 단부로 떨어짐 위험



저수조 상부 단부 접근방지 조치



안전점검 포인트

- 저수조 상부 등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장소의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

4 외부 유리창 교체

☑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유리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소작업대(탑재형) 사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소작업대 주요 구조부 상태 사전 점검 고소작업대의 작업대 4면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 모두 펼친 상태에서 정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고소작업대 작업

주변 장애물 충돌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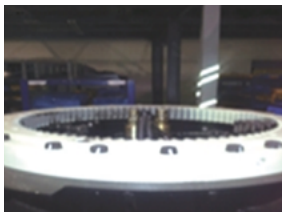
고소작업대 작업위치로 작업대 밀착 및 이격거리 유지



안전점검 포인트

- 고소작업대의 작업대 이동 시 주변 장애물(국기대, 나무, 캐노피)에 충돌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대 이동
- 고소작업대 주요 구조부(턴테이블, 붐인출와이어로프, 붐대 등) 점검 여부 확인 철저(전문 검사기관의 점검(검사)기록 확인)

턴테이블 볼트체결



붐 인출 와이어 점검



붐, 작업대 연결부 등 점검



5 전광판 유지 보수

☑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차단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차단 시 싸인카 전진 배치 및 경고음을 울리면서 라바콘 등을 전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차단 구간 테이퍼 길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소작업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받이울 및 작업발판 해체 및 설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소작업대(탑재형) 4면 안전난간 설치, 정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전광판 안으로 이동 및 작업 시 안전대 착용 크레인(cargo) 전방작업을 지양하고, 정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고소작업대·크레인 붐대 및 자재 등이 특고압에 접촉되지 않도록 이격거리 확보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고소작업대 사용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



고소작업대 교체(안전난간 설치)



안전점검 포인트

- 고소작업대 제원을 확인하고, 정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 아웃트리거 정상 펼침상태를 확인하고, 지반 침하방지조치 및 받침대 확보
- 작업대 4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활선 근접작업

주변에 특고압(22,900V)이 근접 위치하여 감전 위험

↳ 특고압과 이격거리(3m 이상) 유지하도록 지도



안전점검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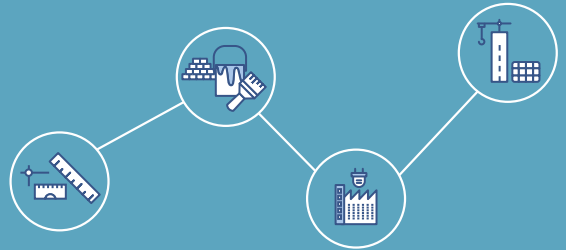
-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절연용 보호구·활선 경보기 착용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킬로볼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센티미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킬로볼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센티미터)
0.3 이하	접촉금지		
0.3 초과 0.75 이하	30	145 초과 169 이하	170
0.75 초과 2 이하	45	169 초과 242 이하	230
2 초과 15 이하	60	242 초과 362 이하	380
15 초과 37 이하	90	362 초과 550 이하	550
37 초과 88 이하	110	550 초과 800 이하	790
88 초과 121 이하	130		

2 실내건축



1 청사 이전 및 통신공사

☑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정부위 기존 칸막이와 몰딩 연결부 해체 및 기존 몰딩 철거 • 천정부위 신규 몰딩 설치 및 신규 칸막이와 몰딩 고정 • 스프링쿨러 이설·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비계(우마) 위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선·통신선 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비계(우마) 위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2인 1조 작업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고속절단기 사용

몰딩 절단 시 베임 및 불티 비산으로 화재 위험

☞ 고속절단기 사용 시 날접촉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불티비산방지막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선·통신선 배선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짐 위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안전작업방법 현장에 게시



안전점검 포인트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는 작업 높이별 안전작업 지침 준수

작업 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1.2m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이상~2m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m이상~3.5m이하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발판 +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2 청사 인테리어공사

☑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량벽체, 유리문·창호유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제작 작업발판 사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이동용 바퀴 구름방지 조치 및 연결부위 등 견고한지 확인 말비계(우마) 위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장 텍스 철거 및 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식비계 위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말비계(우마) 사용

말비계 끝단에서 작업, 폭이 좁은 말비계 사용



폭이 넓은 말비계에서 작업



안전점검 포인트

- 견고한 구조(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의 기성품 사용
- 말비계 양측 끝단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끝단에서 약 20cm 이격)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 이하 유지

목재가공용 둥근톱 사용

목재가공용 둥근톱 날접촉방호덮개 미설치



목재가공용 둥근톱 날접촉방호덮개 설치



안전점검 포인트

- 신체가 위험한계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의 톱날 접촉예방장치 설치
- 가공 중인 목재가 벌어지지 않고 톱날에 끼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분할날 설치
- 가공 중인 목재가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반발예방장치 설치
- 둥근톱의 최대 원주 속도 준수

이동식비계 주를 중간부에 작업발판 거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 미고정(이동식비계 중간에 거치)
 작업발판 고정 지도



안전점검 포인트

- 작업발판 지지부위 안전성 확보 및 작업발판이 탈락되지 않도록 고정
- 이동식비계 바퀴 구름방지조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이동식 사다리 전도 위험, 안전모 미착용

☞ 이동식 사다리 2인 1조 작업, 안전모 착용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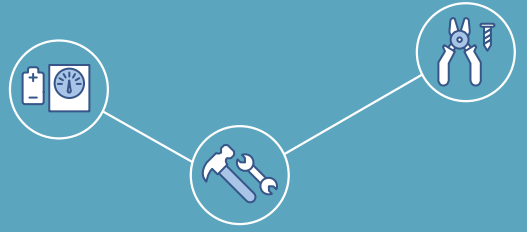


안전점검 포인트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3 기계·설비 교체·설치



1 보일러 버너 교체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버너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너 해체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 전 가스밸브를 차단하고, 인화성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장 주변 잔류가스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통에 점검구 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통 점검구 산소 절단기로 천공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 절단 전 연통 내부 인화성 물질 등 잔류 여부 확인 및 환기 - 보일러 상부에서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보일러 버너 교체

기존 버너 해체 시 보일러 내부 잔류 인화성가스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 기존 버너 해체 전 인화성가스 농도 측정



안전점검 포인트

- 버너 해체 전 가스밸브를 차단한 다음 내부 잔류 가스 제거
- 작업 전 작업장 주변 잔류가스 여부 확인 및 환기
- 메인시스템헤더와 연결된 밸브를 차단하고, 가열된 물을 충분히 식힌 후 해체

보일러 연통에 점검구 설치

- ① 보일러 상부에서 점검구 천공작업 시 떨어짐 위험
- ② 코어드릴로 연통 천공 시 연통 내부 잔류 인화성물질에 의한 폭발 위험
- ↳ 보일러 상부에서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연통 천공 전 가스농도측정기로 내부 인화성 물질 등 잔류 여부 확인 및 환기



안전점검 포인트

- 산소 절단, 코어드릴로 절단 시 연통 내부 인화성 물질 등 잔류 여부 확인 및 환기
- 산소 절단 전 LPG용기 호스 연결부 및 가스 차단 상태를 확인하고, 가스농도 측정
- 보일러 상부에서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2 냉각탑 상부 난간, 주차구역 도색

☑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상부 난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상부 난간 설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고정한 상태에서 난간 설치 -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구역 도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구역 도색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너 점화 전 가스(LPG) 밸브 차단상태 확인, 가스(LPG) 누출여부 확인 및 환기 실시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이동식크레인으로 자재 양중

크레인(Cargo)으로 자재 인양 시 장비 전도, 자재 낙하 위험

↳ 크레인(Cargo) 정격하중 준수, 하부 출입금지 조치



안전점검 포인트

- 작업 전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확인
- 아웃트리거를 모두 펼쳐서 지지력을 확보한 견고한 바닥에 설치
- 카고크레인은 전방작업을 지양하고, 크레인 제원에 따른 정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냉각탑 보수

팬이 회전하면서 회전날에 베임·절단 위험



작업중 팬이 회전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후 메쉬망 설치



냉각탑 상부에서 고소작업 시 떨어짐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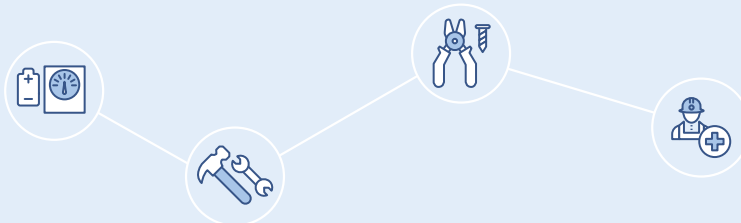


안전대부착설비 등 설치



안전점검 포인트

- 작업중 웬이 회전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 관계작업자 전원 조작 금지
- 볼티가 충진재에 튀지 않도록 볼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설치
- 냉각탑 상부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



③ 실험실 환경개선

☑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 내 칸막이 철거 • 황색등(형광등) 철거 및 LED등 교체 • 실험실 내 후드라인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비계(우마) 위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2인 1조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레탄 패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절단 등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사용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드라인 관통 유리창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탑재형) 사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의 작업대 4면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 모두 펼친 상태에서 정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이동식 사다리 사용

- ① 안전모 미착용
- ② 이동식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 ③ 실험실 천장에서 유해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 위험



- ① 안전모 착용
- ② 이동식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조치
- ③ 실험실 천장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점검 포인트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4 차광망 설치

☑ 핵심 안전조치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펜스에 차광망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탑재형) 사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의 작업대 4면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 모두 펼친 상태에서 정격 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 돌출형 조형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유지 하면서 작업대 이동 • 이동식비계 위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1조 작업 • 말비계(우마) 위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 고소작업 시 안전모 반드시 착용(턱끈 고정)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이동식 사다리 사용

이동식 사다리 단독작업



→

이동식 사다리 2인 1조 작업



안전점검 포인트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5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핵심 안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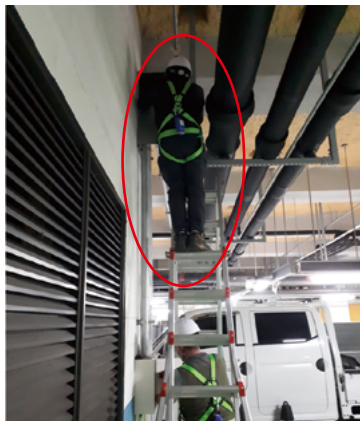
주요 작업공종	필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펜스에 차광망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탑재형) 사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의 작업대 4면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 모두 펼친 상태에서 정격 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 돌출형 조형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유지 하면서 작업대 이동 • 이동식비계 위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1조 작업 • 말비계(우마) 위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 고소작업 시 안전모 반드시 착용(턱끈 고정)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이동식 사다리 사용

이동식 사다리에서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떨어짐, 전도 위험

☞ 안전대 착용 및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고소작업대(시저형) 사용

천장 전원선 포설작업 중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리미트 스위치 유효높이
미준수로 천장 구조물에 협착 위험



과상승방지 리미트 스위치 근로자
키높이 이상(유효높이)으로 조정

※ 리미트 스위치 위치 조정 후 테스트
결과 작동이 되지 않아 반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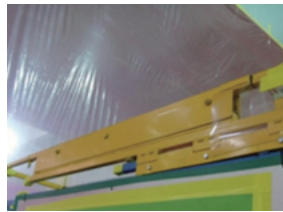
안전점검 포인트

- 고소작업대 수평재 상부에 과상승방지장치 설치하여 끼임 위험 방지

리미트 방식



안전바 방식



근접센서 방식



-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작동상태 확인
- 고소작업대 이동구간 바닥의 요철상태, 장애물 유무 확인 및 최대한 접은 상태에서 이동

천장 상부에서 고소작업

전원선 포설을 위해 천장 위에서 이동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떨어짐 위험

☞ 천장 이동구간 하부에 떨어짐 충격 완화를 위한 추락방지에어매트 설치



안전점검 포인트

- 천장 텍스는 강도가 약하므로 천장으로 올라가서 밟지 않도록 주의
- 부득이하게 천장으로 올라갈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바닥에 에어매트 등 추락방호 시설 설치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 조정
-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 방법 등 협의

위험성평가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점검

- 1회/2일 이상 등 작업장 순회점검
- 1회/2개월 이상 등 합동안전보건점검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작업환경 측정·개선
- 안전보건 정보 제공

안전보건교육

-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 법정교육 지도·지원
- 사업장 특성별 교육

위험장소 예방조치

- 감전, 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 공사기간 단축/위험공법 사용금지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75조, 시행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시행규칙 제79조, 제93조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 **(구성·운영)**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협의체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①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②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방안 ③도급인, 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
- **(협의사항)** ①작업의 시작 시간 ②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③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④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참 고

•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구성
 -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1명(명예감독관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근로자 대표
 - (사용자 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 한정),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 ※ (합의 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
- 협의
 - 산업재해예방 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사항
- 운영 : 노사협의체는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회/1주 이상)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80조
-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참 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시행규칙 제82조

- (구성)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점검에 참여하되, 해당 공정에 참여)
- (점검주기) 분기에 1회 이상
 - ▶ 단,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4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9조 제3항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요청 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 ※ (안전보건교육 지원)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5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81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7 같은 장소 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¹⁾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의 작업시기와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와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시행령 제53조의2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하며,
 - ▶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 * ①화재·폭발②끼임③충돌④추락⑤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 위험⑥전도⑦붕괴⑧질식·중독

1)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8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 총칙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2조, 시행규칙 제37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에 방법, 절차, 관련 서식 등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임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서까지 위험성평가를 관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 수급인은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이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평가의 결과 ③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 (절차) ①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②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③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④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인지 여부의 결정→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⑥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10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임
-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임
 - *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도급인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서 제외
 -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1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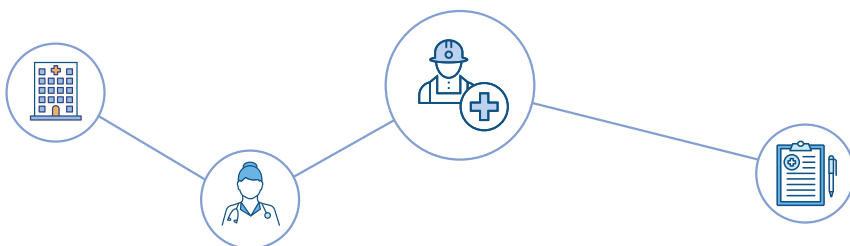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제공자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 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확인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 미제공)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1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강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9조, 제174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 관계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특히,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신설
 - ※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1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다음의 작업* 중 하나를 사내·외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2)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3)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이 경우, 도급인의 시정조치 대상은 관계수급인이며, 관계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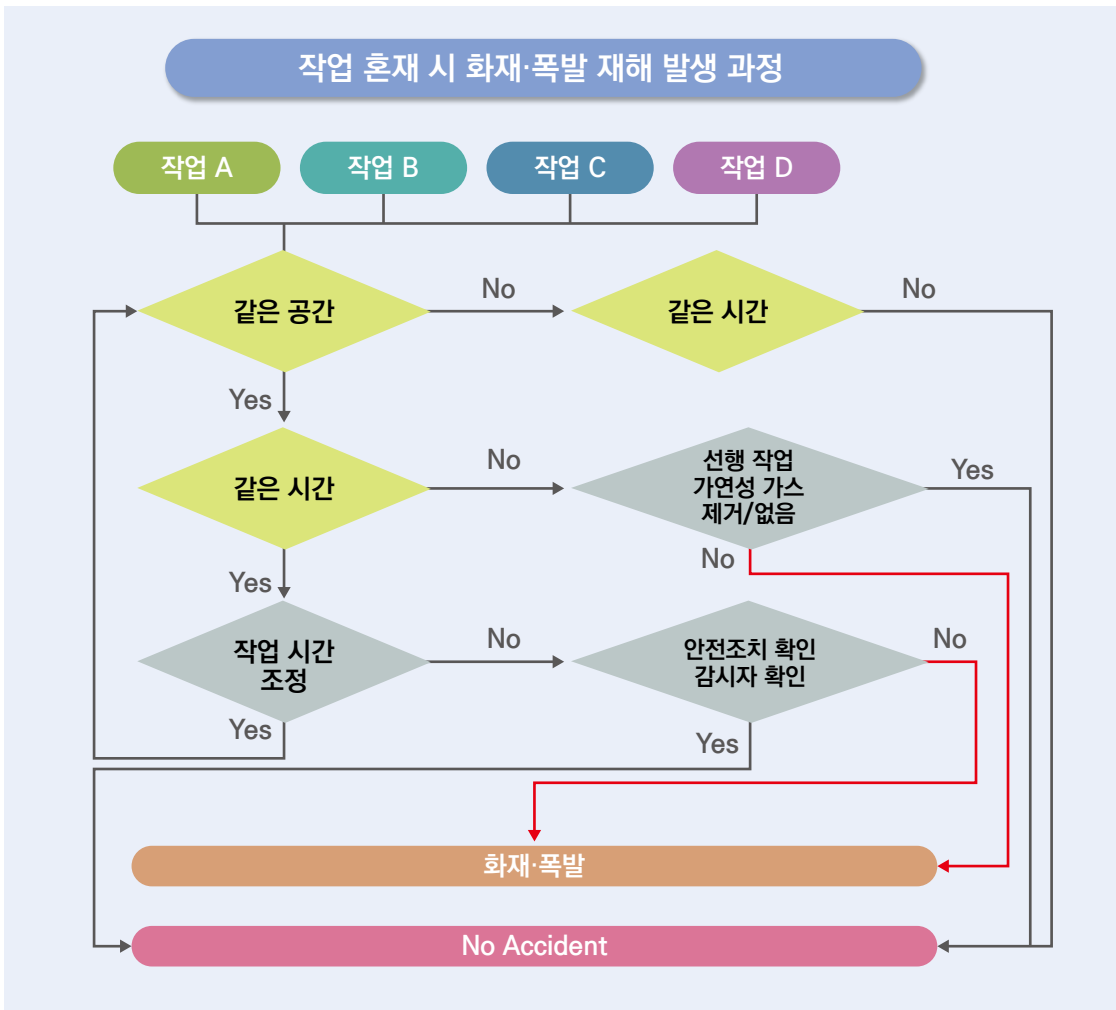
14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확인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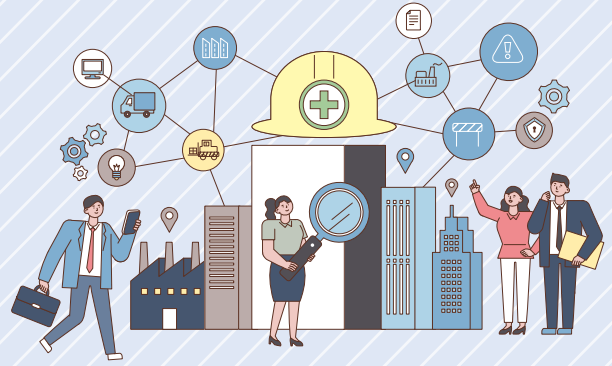
IV 발주공사 산재예방

1.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3.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4. 추락사고 예방 관리



IV

발주공사 산재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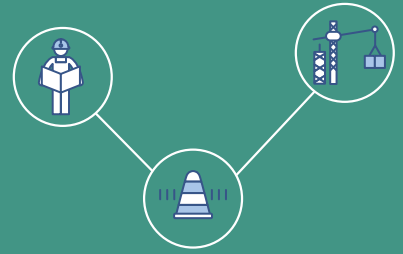
**2021년 한해 건설업에서 417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수의 5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이 장 건설현장의『발주공사 산재예방』에서는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산재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법, 건설현장 점검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주공사 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 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 작성
- ②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 선정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참조)
- ③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 ④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여야 함
- ⑤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전을 고려한 설계안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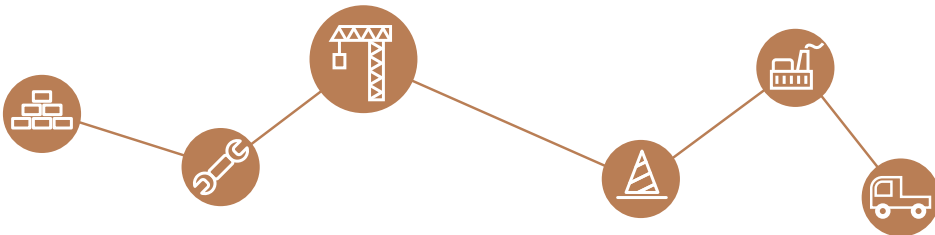
1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에서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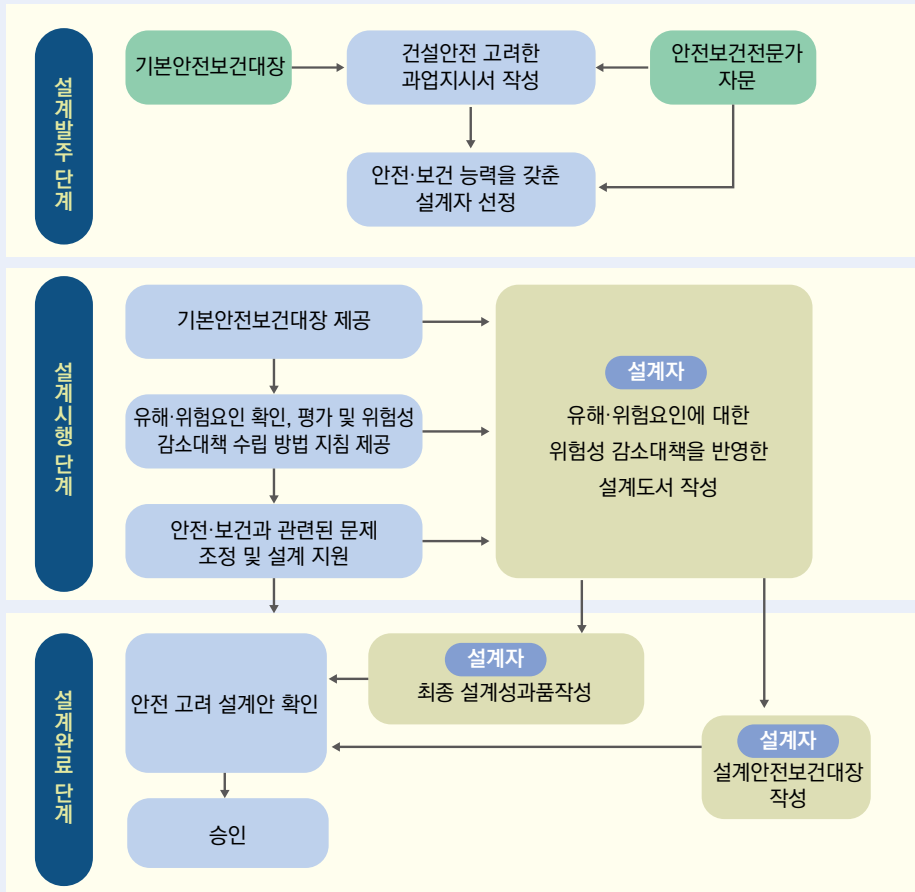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에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획단계)** 건설공사 시 중점 유해·위험 요인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함
 - ▶ **(기본안전보건대장 포함내용)** ▲사업개요(공사규모, 공사예산, 공사기간 등) ▲공사현장 제반 정보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설계조건
- **(설계단계)** <발주자>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자>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설계자의 최종 설계도서 납품 시 확인
- ▶ **(설계안전보건대장 포함내용)**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설계조건이 반영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¹⁾ 내용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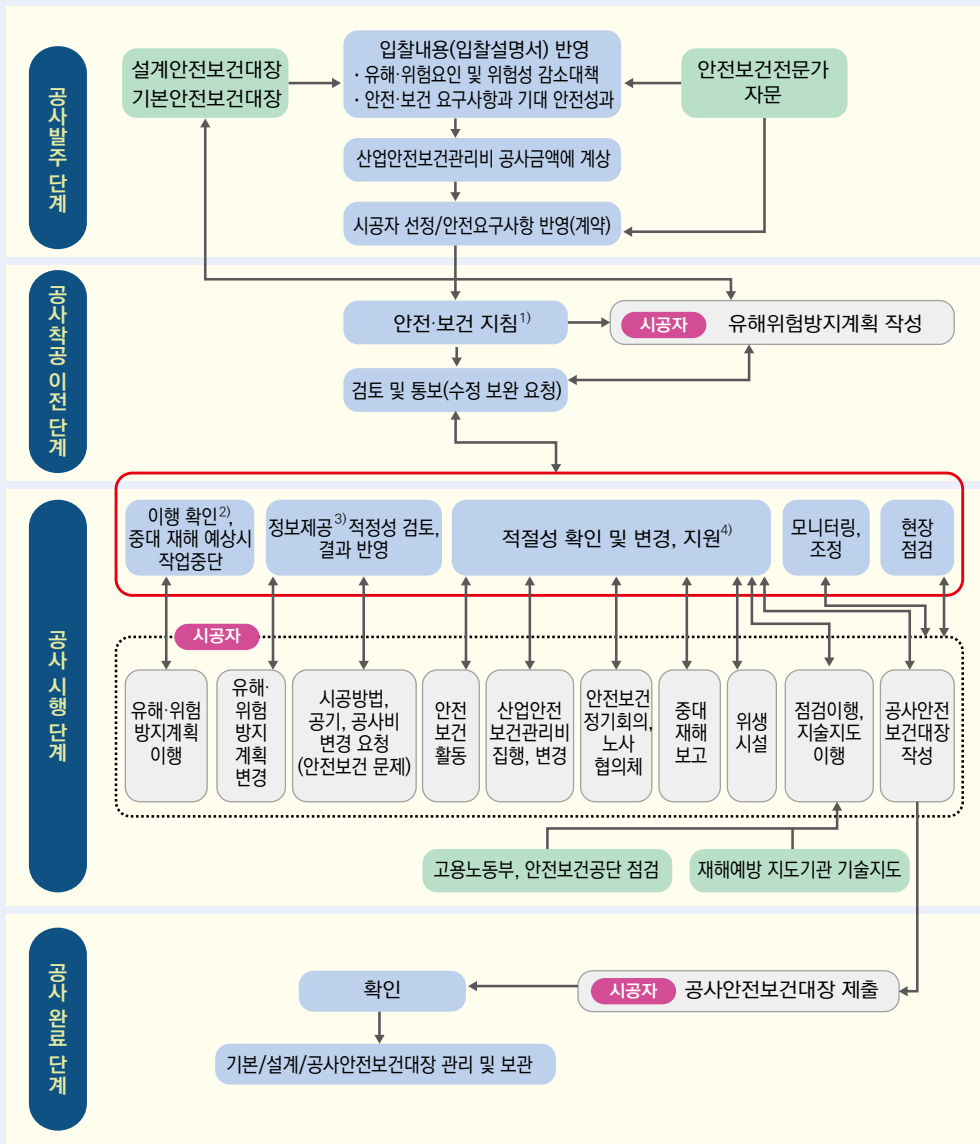
1)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 (45p 참조)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산안법 제42조, 제43조 참조)

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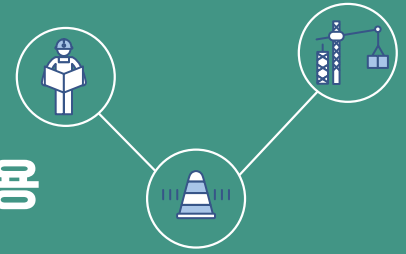
- **(시공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제공, 이를 반영한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행여부 확인
- ▶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을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함
- ▶ **(공사안전보건대장 포함내용)**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안전·보건지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 (이행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이행여부 확인
- (정보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1.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 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
- (적절성 확인 및 변경, 지원)**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맞게 각 항목별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사항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안전보건활동, 관리비, 회의, 협의체 등), 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이 적절하게 적용되어 있는지 등 확인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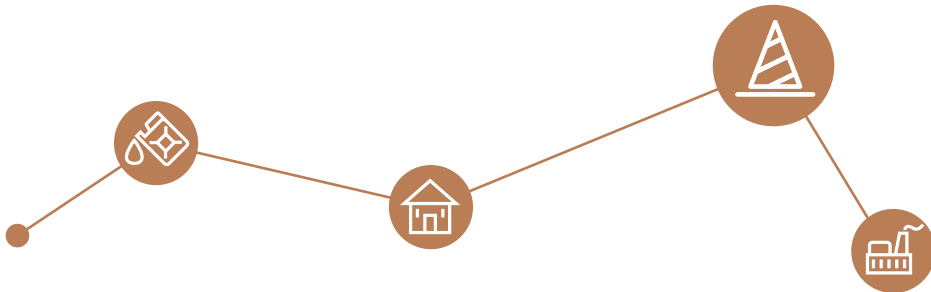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자세한 사용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발주자의 의무)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여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함
- ▶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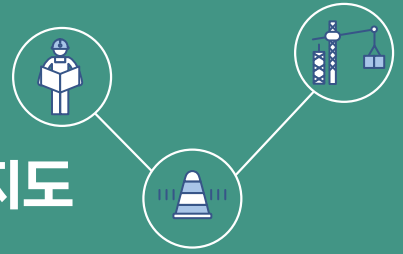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설 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내역 작성의무, 보존의무 위반 시 PQ(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건당 -0.5점, 최대 -1점)





3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인이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자 및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발주하는 자

▶ (적용제외)

- 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③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내용)** 대상이 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도계약 확인

2022년 8월 18일 부터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17> [시행일 : 2022. 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건축법령 관련 조항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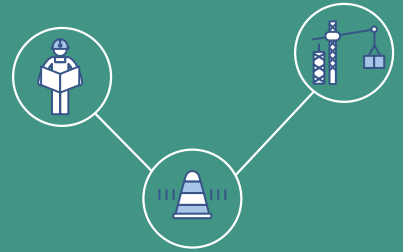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4 추락사고 예방 관리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사고 비중: ('17) 52.5% → ('18) 49.9% → ('19) 50.1% → ('20) 51.9%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직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은 도급인이 진행하는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계)**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의미합니다.
- **(불량비계)** 비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비계로 비계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건설현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비계 설치 기준

- **(하단부)** 밑받침 철물 또는 깔판·갈목 등을 사용하여 밑등잡이 설치
- **(기둥)**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5~1.8m, 장선방향 1.5m 이하,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아랫방향으로 31m를 넘는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움
- **(띠장)** 띠장간격은 1.5m이하,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2m이하에 설치
- **(장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
- **(벽연결)** 수직 X 수평으로 5m X 5m 이내마다 설치
- **(가새)** 기둥간격 10m 마다 45도 각도의 처마방향 가새 설치,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
- **(난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기타)** 추락 및 낙하물 방지조치 설치, 연결 및 이음철물은 가설기자재 성능점검 규격에 규정된 것 사용, 비계기둥간 적재하중 400kg이하

- (달비계) 위에서 달아 내린 비계를 의미합니다.
- (불량달비계) 수직구멍줄 및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달비계로 건설현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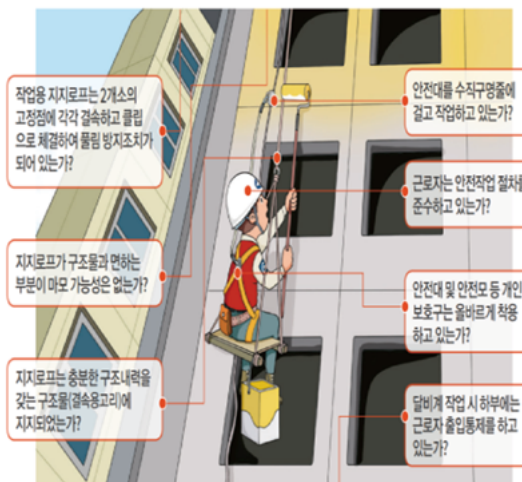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64조



달비계 작업 전 점검 및 예방조치

점검사항

-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 올바른 매듭요령 숙지여부
- 로프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여부
-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여부
- 로프 지지물의 안전성 확인
- 별도의 구멍줄 설치 여부
- 안전모·안전대(추락방지대)지급·착용
- 작업지휘자 배치(지상 및 옥상)
-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1 건설현장 점검요령

STEP 1

점검 전 사전준비

- 현장 특성파악 (공사규모, 건축허가표지판 및 주변 위험요인 등)
- 현장책임자(현장소장 또는 작업반장 등) 연락 및 상주여부 확인
- 신분 안내 및 방문 목적 설명 (추락 등 사망사고 심각성 등 부연)

STEP 2

현장점검 요령

- 현장관계자와 반드시 동행하여 현장을 순회하며 위험요인 점검
- 작업상황을 질문하며,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시설물 (추락 중심)확인
- 위험요인 발견 시 동행자에게 확인 시킨 후 사진 촬영
- 기타 개선·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치 및 지적 사항 메모

점검 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TIP

- (1) 전·후 작업 공정 연상
- (2) 사용 자재의 동선 흐름 이해
- (3) 가설공사(설치·해체등)작업관리가 중요
- (4) 장비 작업공간 및 위치 확인

STEP 3

점검 후 사후조치

- 점검 결과 설명 및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은 즉시 시정조치 요청
-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사항 시정 기한 및 제출방식 설명
- 미개선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패트를 예정임을 안내하고 상시 안전관리 당부
- 심각한 위험현장은 즉시 안전보건공단에 패트를 요청
-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은 반드시 재방문 계획임을 통보

• 구조물공사

외부비계작업



작업발판·안전난간·계단 미설치



작업발판·안전난간·계단 설치

철골작업



추락방호망·안전대걸이시설 미설치



추락방호망·안전대걸이시설 설치

이동식 비계작업



상부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



상부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지붕작업



지붕작업 추락방지조치 미설치



안전대걸이시설, 안전대 부착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예방조치 불량



환기·가연물 제거, 화재감지자 배치

• 도로공사

도로작업



표지판·싸인보드·유도자 미배치



표지판·싸인보드·유도자 배치

건설장비작업



장비 경광등·경고음·고임목 미설치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

장비 경광등·경고음·고임목 설치

굴착기작업



굴착기 안전핀(퀵클러) 미설치



굴착기 안전핀(퀵클러) 설치

트렌치 굴착작업



트렌치굴착 흙막이보공 미설치



트렌치굴착 흙막이보공 설치

가로등/신호등 보수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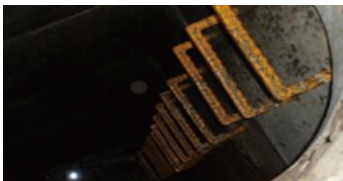
가로등·신호등 작업발판 미설치



가로등·신호등 작업발판 설치

• 기타

밀폐공간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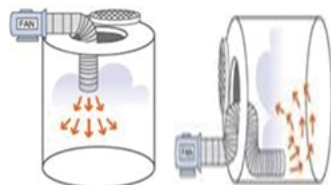


표지판·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실시

밀폐공간작업



환기 미 실시(갈탄 사용 Conic 양생)



환기 실시

인양작업



인양로프(슬링벨트 등)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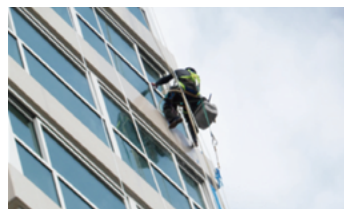


인양로프(슬링벨트 등) 적정

외벽청소
도장작업



수직구명줄 미설치



수직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연결

전기작업



전선 심선노출·누전차단기 미설치



충전부 방호조치·누전차단기 설치

▣ 구조물공사 현장점검표 ▣

□ 현장 개요

시공사명		현 장 명	
소 재 지		공사금액 (억원)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무
○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현장 제외)				
○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지정여부 및 현장 지휘·감독 상태				
○ 안전모(턱끈 포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상태				
○ 이동식비계·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조치 상태				
○ 철골·지붕작업 시 추락방호망·안전대걸이시설 설치 상태				
○ 용접·용단 작업 시 환기·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조치 상태				
○ 기타: 사다리는 통로용으로 사용하고 작업대 사용 금지				
조치 요청 사항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소 속	성 명	서 명
점 검 자			
점 검 자			
현장관계자			

▣ 도로공사 현장점검표 ▣

□ 현장 개요

시공사명		현 장 명	
소 재 지		공사금액 (억원)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무
○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현장 제외)				
○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지정여부 및 현장 지휘·감독 상태				
○ 안전모(턱 끈 포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 도로 작업구간 前 표지판·싸인보드·신호수 배치 등 상태				
○ 가로등·신호등 보수 시 작업발판(고소작업대 등) 설치 상태				
○ 굴삭기 등 장비의 경광등·경고음·안전핀·신호수 배치 여부 등				
○ 트렌치굴착 시 지보공 설치, 견고한 지반상태(연약지반) 등 여부 * 기초 터파기 공사에서 폭은 좁고 길게 파는 일				
○ 기타: 사다리는 통로용으로 사용하고 작업대 사용 금지				
조치 요청 사항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소 속	성 명	서 명
점 검 자			
점 검 자			
현장관계자			

▣ 관로공사 현장점검표 ▣

□ 현장 개요

시공사명		현 장 명	
소 재 지		공사금액 (억원)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무
○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현장 제외)				
○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지정여부 및 현장 지휘·감독 상태				
○ 안전모(턱끈 포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 등 측정·환기·감시인 배치 상태				
○ 굴삭기 등 장비의 경광등·경고음·안전핀·신호수 배치 여부 등				
○ 트렌치굴착 시 흙막이보강 설치·굴착면 기울기 준수 등 여부 * 기초 터파기 공사에서 폭은 좁고 길게 파는 일				
○ 관로 등 자재인양 시 적정 인양로프 사용 상태				
○ 기타: 사다리는 통로용으로 사용하고 작업대 사용 금지				
조치 요청 사항				

□ 현장 점검 확인 : 20

	소 속	성 명	서 명
점 검 자			
점 검 자			
현장관계자			

▣ 기타공사 현장점검표 ▣

□ 현장 개요

시공사명		현 장 명	
소 재 지		공사금액 (억원)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무
○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현장 제외)				
○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지정여부 및 현장 지휘·감독 상태				
○ 안전모(턱끈 포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 덤프트럭 등 장비의 경광등·경고음·신호수 등 설치 상태				
○ 제초작업 前 표지판·싸인보드·신호수 배치 등 상태				
○ 가지치기 작업 시 작업발판, 절연용 방호구 설치 상태				
○ 외벽청소·도장 작업 시 수직구명줄·추락방지대 착용 상태				
○ 기타: 사다리는 통로용으로 사용하고 작업대 사용 금지				
조치 요청 사항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소 속	성 명	서 명
점 검 자			
점 검 자			
현장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안전은
관리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이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보도자료,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게시한 누리집**

누리집 QR



- 법령 자료 (법, 시행령, 해설서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 보도자료
- 홍보·안내 자료 (시행 안내서, 안내 동영상, 리플릿 등)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연결방법

1 고용노동부 누리집 →
메인화면 연결배너 **클릭**



2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안심일터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클릭**



3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1 자주 찾는 메뉴 → 중대재해처벌법 **클릭**
- 2 팝업존 → 연결배너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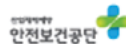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화면



• 연결 배너
이미지



2022-교육혁신실-31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자료 QR 코드

자료명	주소	자료명	주소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2021 안전보건자료 활용가이드 OPS	
환경미화 종사자 안전수칙(스티커)		(폐기물 운반트럭)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스티커)	
산재발생 보고 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안내 OPS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2020년 산업재해 현황		위험성 평가 지침 해설서 (2020년,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	
2022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감정노동 종사자 (작은배려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자율진단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지방관서	위치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서울시	02-2250-5897	서울시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인천시	032-460-4428	인천시·부천시·김포시·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 양주시·포천시·연천군· 고양시·파주시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경기도 수원시	031-259-0249	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 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양평군·광명시·안양시·과천시· 의왕시·군포시·안산시·시흥시· 평택시·오산시·안성시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부산시	051-850-6483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대구시	053-667-6388	대구시·경상북도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광주시	062-975-6349	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대전시	042-480-6358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 세종시
강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강원도 춘천시	033-269-3581	강원도
제주산재예방지도팀	제주 특별 자치도	064-728-7139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관할지역, 연락처

지역본부·지사	위치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02-6711-2897	서울특별시종로구·중구·동대문구·서초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624-8740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86-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033-815-1010	강원도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원 강릉시	033-820-2571	강원도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12	부산광역시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31	울산광역시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055-269-0552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055-371-7540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49-874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063-240-8532	전라북도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063-460-3631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061-689-4917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061-288-0733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1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45	인천광역시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관할지역, 연락처

지역본부·지사	위치	연락처	관할지역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031-259-7133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031-828-1961	경기도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고양파주지사	경기 고양시	031-828-1961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경기서부지사	경기 안산시	031-481-7521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031-785-3324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경기중부지사	경기 부천시	032-680-6513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053-609-0552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 및 군위군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053-650-6854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외)·고령군 및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054-271-2022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054-478-8022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석적읍 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042-620-565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043-230-7113	충청북도
충북북부지사	충북 충주시	043-849-1000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041-570-3434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 및 예산군,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발행일 2022년 3월
기 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권기섭)
제 작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손필훈,
사무관 권기준, 근로감독관 정상은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부장 이승욱, 차장 정민찬, 과장 우성윤
인 쇄 현기획

[비매품]